

제420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 12월 23일(월)

장 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48)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78)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58)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53)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4)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488)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07)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49)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1)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43)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97)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2)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93)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61)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17)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11)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3)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44)
-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7)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5)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38)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44)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6)

-
- 2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22)
 - 2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35)
 - 28.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3)
 - 29.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4)
 - 30.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22)
 - 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23)
 - 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13)
 - 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19)
 - 3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02)
 - 35.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7)
 - 3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1)
 - 3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2)
 - 3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75)
 - 39. 빙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49)
 - 40.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1)
 - 4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98)
 - 4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39)
 - 43.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43)
 - 4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88)
 - 45.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36)
 - 46.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58)
 - 4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05)
 - 4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0)
 - 49.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97)
 - 5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27)
 - 5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38)

-
- 5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6)
 - 5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2)
 - 5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80)
 - 55.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6)
 - 56.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21)
 - 57.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92)
 - 58.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67)
 - 5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46)
 - 6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18)
 - 61. 2024년도 국정감사 중인 고발의 건
 - 62. 2024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회안)
 - 63.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 규모 등에 관한 보고
 - 64. 현안 보고
 - 쿠팡 CLS 택배기사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생활물류제도 개선 방안
-

상정된 안건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48)	6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78)	6
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58)	6
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53)	6
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4)	6
6.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7.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88)	6
8.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07)	6
9.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49)	6
10.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1)	6
11.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43)	6
12.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13.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97)	6
1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2)	9
15.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93)	9
1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61)	9
1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17)	9
18.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11)	9
1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3)	9

2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44)	10
21.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7)	10
2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5)	10
2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38)	10
2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44)	10
2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6)	10
2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22)	10
2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35)	10
28.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3)	10
29.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4) ..	10
30.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22)	10
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23)	10
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13)	10
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19)	10
3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02) ..	10
35.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7)	10
3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1)	10
3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2) ..	10
3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75) ..	10
39. 빙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49)	10
40.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1)	10
4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98)	10
4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39)	10
43.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43)	10
4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88)	10
45.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36)	10
46.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58)	10

4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05)	10
4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0)	11
49.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97) ..	11
5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27)	11
5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38)	11
5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6)	11
5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2)	11
5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80)	11
55.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6)	11
56.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321)	11
57.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92)	11
58.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67)	11
5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46)	11
6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18)	11
63.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 규모 등에 관한 보고	15
64. 현안 보고	15
- 쿠팡 CLS 택배기사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생활물류제도 개선 방안	

(10시08분 개의)

○위원장 맹성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유형 및 규모 등에 관한 보고와 쿠팡 CLS 택배기사 사망사고와 관련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고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비상계엄으로 국민들은 불안감에 떨며 밤을 지새워야 했고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울러 최근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로 고통받던 국민들의 삶은 대외신인도 하락과 그로 인한 환율 급등으로 인하여 더욱 고통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그리고 탄핵소추로 일단락되었지만 국무총리가 대통령권 한대행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비상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악재로 우리 경제의 앞길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훼손된 헌정과 국격을 바로

세우고 무너져 내린 우리 경제를 되살려야 합니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내년 이후 5년간 연평균 1.8%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없으면 국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하루빨리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만 투자가 늘고 내수 소비가 진작될 것입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주거와 교통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정책을 다루는 만큼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도 민생과 가장 최접점에 있는 만큼 국민들의 안정적인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동안 추진해 온 국토·교통 정책을 점검하고 향후 더 나은 정책을 위해서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48)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78)
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58)
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53)
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4)
6.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488)
8.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07)
9.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49)
10.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1)
11.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43)
12.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97)

(10시11분)

○**위원장 맹성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이상 13건의 법률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법안심사소위 소위원장이신 문진석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문진석**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 문진석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2월 3일 23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해 11건을 의결했습니다. 먼저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도사업자가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 예약 체계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철도사업자와 교통약자의 범위, 예약 방법 등 세부내용을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수정했습니다.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중교통기본계획에 농어촌·벽지 주민의 이동권 보장 내용을 추가하고 대중교통시책 평가를 의무규정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동일 지자체 내의 대중교통 불균형 해소에 관한 사항은 지방대중교통계획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다음, 본 의원과 이춘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사고 사상자 수 감소에 기여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마을주민 보호구간 사업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로망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춘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철도망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일정 등을 감안하여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정규정을 반영하여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변경하도록 한 적용례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맹성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차권 부정판매 금지 의무 위반 조사를 위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의무 위반자 조사를 위해 정보를 제공해야 할 정보제공자 및 정보유형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및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시험에 19세 미만인 사람도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했습니다.

곽규택·김기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운송사업자의 피해구제계획 수립 및 이행의 면책 요건에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의 준수를 추가하고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제공 실태 점검의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손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항시설 사용료 체납 시 연체금 부과 징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인 연체요율 등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연체이자율의 변동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문진석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첨부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결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법률안 중 재정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비용추계를 의뢰하였으나 본회의 부의 전까지 비용추계서가 회신되지 못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6항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12항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자구의 정리와 대안 및 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장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권영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 문진석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 가운데 도로법, 철도사업법, 철도안전법, 항공사업법 및 공항시설법 등 총 13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하위법령 정비와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안 심의에 대한 감사의 말씀과 덧붙여서 최근 상황에 대한 국무위원으로서의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위원으로서 시국이 현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정치적 혼란과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국민들께서 걱정하시고 정부 정책이 제대로 계획대로 추진되는지에 대해 우려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비상계엄은 잘못된 조치였다고 생각하고 이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며 언제든지 적절한 처신을 할 준비가 돼 있다는 말씀도 덧붙여 드립니다.

다만 행정각부의 장관으로서 국정을 정상 수행할 의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국토교통부는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추진 중인 정책들을 계획대로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도로 철도 등 SOC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택배 건설 등 현장근로자 근로여건 개선과 주거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부가 주어진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1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2)
 15.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93)
 1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61)
 1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17)
 18.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11)
 1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3)

-
- 2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44)
 - 21.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7)
 - 2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5)
 - 2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38)
 - 2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44)
 - 2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6)
 - 2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22)
 - 2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35)
 - 28.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3)
 - 29.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4)
 - 30.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22)
 - 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23)
 - 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13)
 - 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19)
 - 3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02)
 - 35.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7)
 - 3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1)
 - 3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2)
 - 3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75)
 - 39. 빙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49)
 - 40.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1)
 - 4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98)
 - 4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39)
 - 43.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43)
 - 4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88)
 - 45.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936)
 - 46.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58)
 - 4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05)

4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0)
49.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97)
5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27)
5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38)
5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6)
5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2)
5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80)
55.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6)
56.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21)
57.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92)
58.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67)
5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46)
6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18)

(10시20분)

○**위원장 맹성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60항까지 총 4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6항의 법률안에 대해서 이성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권 의원** 존경하는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국민의힘 부산시 사하갑 국회의원 이성권입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가도시공원은 도시공원 가운데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의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려는 목적이지만 그 취지와 달리 현재까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사례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국가도시공원 지정이 전무한 이유는 국가정원 국립공원 등 다른 공원과 달리 그 절차와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국가도시공원은 지자체가 소유권을 갖는 300만m² 이상의 부지가 있어야 하고 국무회의 심의도 거쳐야만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자체가 대규모 부지를 자체 소유하기 쉽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제도라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의원은, 맹성규 위원장님도 이 법안 개정안을 내셨지만 그 취지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도시공원 지정 절차 중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삭제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 중 부지 면적 기준을 300만m² 이상에서 200만m²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셋째, 부지 면적 산정 시 국가로부터 점용·사용허가 또는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 동의를 받은 국유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률안의 취지는 국가도시공원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나치게 까다로운 지정 요건을 현실성 있게 개선하여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활성화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원을 관광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그 밖의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42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서 박재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국토 분야 법률안 29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약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 상단 부분 되겠습니다.

엄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사업자 공제조합의 사업 대상에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로서 부동산개발업자 등 시행사를 추가하려는 것으로서 최근 물가상승 및 금리인상 등으로 건설시장에서의 자금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과 건설공제조합의 재정건전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하단 부분 되겠습니다.

권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광역도로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추가하려는 것으로서 각 개정안은 해당 사업의 보상 절차를 앞당기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여 범위의 상한선 기준을 토지가치 상승분의 100분의 50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자체적으로 정하는 공공기여 기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를 완화함과 아울러 과도하게 공공기여를 산정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갈등 요소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되겠습니다.

복기왕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의무보증 가입을 위해 전액 보증이 아닌 일부 보증 방식을 선택할 경우 보증 가입 금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현행 주택가격의 60%에서 50%로 하향함으로써 보증 가입 금액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 연립 또는 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경매 낙찰가율이 60% 미만이 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은 일부 보증에 가입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방지하려는 취지의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정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빙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빙집정보 공개 범위를 소재지, 노후도, 매매정보 등으로 구체화하려는 것으로서 빙집의 매매 활성화를 통한 효율적인 빙집 정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부터 제60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서 곽현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곽현준 전문위원입니다.

교통 분야 18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정동만 의원·엄태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최초 물류창고업 등록 시기를 놓쳐 미등록 상태에 있는 중소업체들에 대한 제재를 행정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하여 미등록 상태에 있는 업체들의 자진 등록을 유도함으로써 물류창고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취지를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5쪽, 윤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설주차장의 기계식 주차장 설치 비율 또는 설치 대수를 지자체 조례로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기계식주차장의 이용효율성·경제성과 최근 관련 안전관리제도가 강화된 점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복기왕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철도 노선을 연장 또는 개량하여 신규 노선으로 활용하거나 이에 연계하여 역 시설을 증개축하는 경우 국가가 일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함으로써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접근성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았으며 개정안에 따른 국가 재정부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황운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비자 피해보상 및 항공 마일리지 적립·사용 혼란 등에 대한 제출명령 및 공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항공교통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으며 외국 국적 항공사의 적용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정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교통서비스 수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근거 마련 이후 이를 소속기관에 위임함으로써 항공교통과 관련하여 규제 당국으로서의 기능과 서비스 제공 기능을 분리하여 이해충돌 회피를 도모하고 국제항공기구의 권고를 이행하려는 취지를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물운송행정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화물운송행정의 효율적 운영, 철저한 화물차 허가 정보 관리 및 불법행위 방지를 도모하려는 취지를 타당하다고 보았으며, 동 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는 주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상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준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조금 이따가 이것 끝난 다음에 하시지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대체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석 위원님.

○이춘석 위원 제가 교통소위에 있어서 교통소위에 관한 법률은 소위에서 제가 검토를 하면 되고요, 제가 국토소위에는 소속되지 않기 때문에 국토소위와 관련된 법안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6번·27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는데 26항은 특정 지역 사업에 대해서 공익사업으로 분류해서 특정 지역에 특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반대의 입장을 피력하고요. 또 27항에 대해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을 위한 특별법 자체가 저는 헌법적 위반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지역에 특혜를 주면서 특정 지역, 아주 한정된 지역에 대해서만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의 근거를 가지고 또 다른 사업을 확장해서, 공익사업을 확장해서 이 대도시 광역권의 사업 범위를 더 넓히는 것은 그 근거 법률 자체가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 법에다가 또 다른 사업 범위를 넓혀서 확장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2개의 법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위에서 잘 논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맹성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42항까지 이상 29건의 법률안은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로, 의사일정 제43항부터 제60항까지 이상 18건의 법률안은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로 각

각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과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상정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간사 간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의사일정 제61항 및 제62항은 상정하지 않고 다음 회의에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준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지요.

○**한준호 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오늘 이 고발 안건과 관련해서 21그램 김태영 대표,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과 관련해서 지난 국감에서 저희가 굉장히 뜨겁게 논의를 했던 내용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두 차례나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는 해외 도피를 시도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했는데 결국에는 국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위원들까지 찾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명확히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 대한 모욕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불출석 등의 죄를 함께 물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21그램 김태영 대표에 대해서는 여야 간 큰 이견은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안건들 2개를 빼는 것에 대해서,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최고위 출석 때문에 사전 회의를 참석하지 못해서 정확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것을 저희가 오늘 넘어가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번 더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오늘 중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한번 협의를 추가적으로 더 해 보시겠습니까, 김태영 씨에 대해서?

○**문진석 위원** 얘기해 볼게요.

○**위원장 맹성규** 알겠습니다. 논의를 한번 추가로 해 보세요.

63.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 규모 등에 관한 보고

64. 현안 보고

- 쿠팡 CLS 택배기사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생활물류제도 개선 방안

(10시35분)

○**위원장 맹성규** 의사일정 제63항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 규모 등에 관한 보고, 의사일정 제64항 현안 보고,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난해 처리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부대의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매 6개월마다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에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제4조의2에 따르면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 규모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6개월마다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전세사기 피해 현황과 정부 대책을 살펴보고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현안보고는 쿠팡 CLS 택배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생활물류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피해자 지원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피해 규모 분석 결과입니다.

작년 6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약 2만 5000여 명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었습니다. 전세사기의 약 60%가 수도권에서 발생했으며 피해자의 상당수가 20~30대의 청년층이었습니다. 피해금액은 보증금 3억 원 이하가 대부분이었으며 다세대주택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1인당 평균 피해금액은 약 1억 3000만 원이며 경공매를 통해 평균 약 6000만 원의 보증금이 회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사기 유형 분석 결과입니다.

동시진행 무자본 캡투기 유형과 선순위 과다 두 가지 유형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피해자 지원 현황입니다.

약 2만 5000명의 피해자 중 2만 2000여 명에게 총 970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할 때 발생하는 경매 차익을 활용해 최장 10년간 임차인의 무상 거주를 지원하는 방안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89채 매입을 완료하였고 3721채는 매입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 시행 초기인 만큼 아직 실적이 많지는 않지만 법 개정 전에 대비해서 1.7배 이상 증가한 매입 협의 신청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 실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세제 지원, 경공매 지원, 법률·생계 지원 등도 차질 없이 추진 중입니다. 11월 30일 기준 약 6590억 원의 구입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였고 총 32억 원 수준의 취득세·재산세도 감면하였습니다. 916건의 경공매 유예 요청이 있었는데 모두 매각 기일을 연기하였고 소송대행 등 법률 지원도 약 600여 건 이상 진행하였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가 하루라도 빨리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쿠팡 CLS 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쿠팡 소속 택배 종사자의 연이은 사망사고로 쿠팡의 열악한 근무 여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쿠팡의 위수탁계약서와 서비스 수행 목표·구역조정 제도 등 일명 클렌징 조항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쿠팡 측과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협행 법령 체계 내에서 가능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쿠팡의 위수탁계약서는 생활물류법에 따른 정부의 표준계약서와 동일한 수준으로 수정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택배 종사자의 과로를 초래하는 클렌징 조항도 다른 택배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정부는 택배 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택배기사의 소분류 작업 제외, 표준계약서의 주요 사항 의무화 등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택배 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국토교통부 주요 현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태영 위원님.

○염태영 위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이후에 법 시행은 이제 한 달 좀 넘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염태영 위원 그리고 지난해 법이 통과된 이후에 6개월마다 한 번씩 시행 경과를 보고해 주시기로 했고 올해 하반기는 지금 보고로 대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염태영 위원 그런데 실제로 피해주택 매입 실적을 보면 사전협의 신청 건수가 2908호, 지난번의 법 개정 이전 75주간의 신청 건수보다 불과 한 달간 한 4주간에 신청한 건수가 2배 이상 되니까 이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심리가 굉장히 높다는 것 알 수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염태영 위원 그래서 일일 평균 20건 정도였던 것이 육칠풍 건으로 됐으니까 3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주간 단위로는 30배 이상.

○염태영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피해자 우선매수권 양도 건수가 334건에 불과하고 또 경매 일정이 확정된 것이 고작 17건, 그러니까 전체 2900건 이상 되는 것 중의 1%도 되지 않다는 것도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렇습니다.

○염태영 위원 사실은 이렇게 더딘 이유 그리고 또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고 특히나 위반건축물이면 더 오래 걸리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아무래도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염태영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런 모든 것 때문에 우리가 법안에 대한 대안을 냈던 것인데 정부안으로 끝까지 가느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우려가 큽니다만 일단 지금은 그래도 정부안대로 계속 가야 된다고, 우선은 더 시행해 보고 판단하자고 하실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지난번에 예산심의 당시에 전체 피해자 수의 한 육칠풍 % 정도까지는 내년도에 LH가 적극적으로 매입에 나설 수 있도록 해서 7500호 목표를 1만 5000호로 높이는 것까지도 협의가 된 바 있어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부대의견에 그렇게 명기가 돼 있습니다.

○염태영 위원 그리고 주택도시기금의 매입임대 예산 1조 2000억을 또 별도 심의를 통해서 2배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가 된 것 있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300억을 더 순증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가 됐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증액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추경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을 반드시 반영해 주셔야지 그래도 내년도에 이 속도감을 맞춰 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때세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추경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7500호가 반영이 돼 있는데 이게 경매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경매를 얼마든지 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법원에 협조는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하지 않더라도 일단 주택기금은 20% 범위 내에서 또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쨌든 행정 절차는 다 되고 있는데 돈이 모자라서 구제가 안 된다 하는 일이 안 생기도록 미리미리 체크하고 사전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염태영 위원** 오늘 보고해 준 전체 틀과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할 게 너무 많아서 개별적으로 서면질의를 할 테니까 그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개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감사합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손명수 위원님.

○**손명수 위원** 장관님, 저도 전세 관련해서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것에 따르면 대부분의 가장 많은 피해 유형이 다세대주택이고 또 그 다음에 사기 유형으로 보면 무자본 캡투기, 선순위 권리 과다가 48% 45%로 합치면 거의 93%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손명수 위원** 이게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아예 보험도 가입하지 못해 가지고 사기 피해를 당한 케이스고, 이게 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에는 이 피해를 고스란히 지금 국가가 보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HUG가 지금……

○**손명수 위원** 그러니까 HUG가 보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손명수 위원** 그래서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이 애초에 다세대 같은 경우에 70%에 시작했다가 지금 100%까지 갔다가 90%로 낮춰져 있는 상태인데 실제로 경공매 갈 경우에 다세대주택은 낙찰가액이 50% 미만이잖아요, 사실상 대부분이.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90%의 보증금액 비율은 여전히 대규모, 그것도 아주 대규모로 전세사기에 악용될 소지가 매우 많은데 상임위 때도 여러 번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국토부에서도 개선 의지를 보이셨는데 그 보증금 반환 비율 개선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게 사실 동전의 양면 측면이 있어서 그게 너무 낮추게 되면 임대사업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해서……

○**위원장 맹성규** 손 위원님, 자료 요구를 해 주시고요. 질의는 조금 이따……

○**손명수 위원** 아니, 그래서 그 계획을 좀 제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계획을 자료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 쭉 개선해 온 실적하고 그것 개선할 때 왜 개선을 했는지 하는 이유를 써서 설명드리고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도 같이 자료를 만들어 보고드리겠습니다.

○**손명수 위원**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 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예, 말씀하세요.

○윤종오 위원 지난번에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 및 감독과 관련해서 특별법에 포함됐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주택법. 지자체의 관리의무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종오 위원 예, 이 부분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지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지금 두 군데 정도 실적이 있는데요. 두 군데 있는데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고요. 앞으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일단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맹성규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국정감사 관련해서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 감사원 감사요구안에 대해서 권영진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권영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준호 위원님께서 21그램 김태영 증인에 대한 고발 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야 간사 간에 국정감사에서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또 고의로 동행명령장을 회피한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국회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조치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김태영 증인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하는 것은 합의했습니다.

다만 상임위에서 이걸 처리하는 시점과 관련하여 지금 현재 양당 간사 간에 국정감사 전체에서 나타난 문제를 어느 수준까지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고 어느 수준까지 고발 조치할까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1그램 김태영 증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합의를 봤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다음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보고서와 함께 고발건 그리고 감사요구안을 처리하도록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한준호 위원님, 되셨습니까?

○한준호 위원 예.

○위원장 맹성규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질의 순서에 따라 희망하시는 위원님순으로 하시고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철 위원 민홍철입니다.

박상우 장관님, 지난 20일 날 가덕도신공항 거버넌스 협약식에 오셔 가지고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동남권 발전을 위해서 약속하신 것 그대로 이행해 주시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렇게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홍철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장관님께서 12월 3일 날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송구하다고 사과 말씀도 해 주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처음의 국무회의, 그러니까 선포 전의 국무회의는 참석을 하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참석 못 했습니다.

○**민홍철 위원** 못 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민홍철 위원**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계엄 선포 해제 국무회의는 참석을 하셨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민홍철 위원**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기획재정부나 경찰청이나 기타 부서에 대해서는 계엄과 관련해서 지시 공문이, 지시가 내려 갖고 했어요. 그러면 국토교통부에 관련해서는 특별히 계엄과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없었습니다.

○**민홍철 위원** 없었어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민홍철 위원** 어떤 교통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것은 제가 지시를 받아서가 아니고 11시 50분에 저희 간부들 화상으로, 저는 서울에 있었고요. 그래서 화상으로 비상간부회의를 했는데 몇 가지 지시를 했습니다. 일단 이런 사태가 생겼으니 경거망동하지 말고 통신망을 잘 유지를 하고 비상대기를 해라.

○**민홍철 위원** 그것은 장관님의 직접 지시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제가 직접 지시한 겁니다. 그리고 교통실장에게 그다음 날 아침에 버스나 택시 같은 대중교통이 정상적으로 운행되도록 밤늦은 시간이지만 관련 사업 조합에 협조를 구해라라고 한 것은 제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내린 지시였습니다.

○**민홍철 위원** 그러면 국토교통부에 대해서는 특별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계엄사령부로부터 또는 대통령으로부터 지시가 없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없었습니다.

○**민홍철 위원** 앞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철도공단 이사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지금 현안이요, 오늘 아마 오후 2시에 대구 동대구역에서 박정희 동상 제막식을 한다는 보도가 돼 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예, 알고 있습니다.

○**민홍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국정감사나 평상시 상임위원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지를 못하고 지금 제막식까지 한다고 하는데, 물론 철도공단에서 가치분 신청을 뒤늦게 하고 있어요. 이게 고가교 부분이 지금 국가시설물 아닙니까? 철도공단 소유지요?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지금 현재 소유권에 대해서는 법적인 이런저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요. 지금 공사를……

○**민홍철 위원** 아니, 동상의 소유권 말고요. 철도 부지 위에 고가교 그 부분이……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고가교의 소유권은 지금 현재 대구시에서 공사 중에 있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민홍철 위원 그러면 지금 소유권은 아직 모르고 있는 겁니까?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그렇습니다.

○민홍철 위원 정해지지 않았어요?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향후에 대구시로 이관될 그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민홍철 위원 그런데 국가철도공단에서 공문을 보냈잖아요, 이 고가교 위에는 현재 협약에 의해서 철도공단의 승인하에 조형물을 만들어야 된다.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저희들이 그래서 국감 이후에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이런 내용을 알고 대구시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해서 해 달라.

○민홍철 위원 그래서 조형물이라든지 시설 유지 관리하는 데 있어서야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합의가 안 된 특정 인물에 대한 이런 동상을 기념물을 갖다가 국가시설물과 관련된 지역에다 설치하는 것은 철도시설공단에서 아주 강력히 제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가처분 신청을 했고요.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홍철 위원 그런데 대구시 의견을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동대구역 고가교 상부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조경시설이라든지 수목식재 이렇게 돼 있는데 답변이 아래 돼 있어요. ‘조형물, 동상 등 설치’ 이렇게 답변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더 이해를 못 한 것은 경미한 유지 관리 업무다, 동상 설치하고 이게 경미한 유지 관리 업무입니까?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차례 공문을 보내서 이러한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저희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하라 이렇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홍철 위원 이것은 대구시가 그런 공문을 따르지도 않고 위법적인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뿐만 아니라 강력히 제재를 하고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저희들이 가처분 신청은 일단 해 놓은 상태고요. 만약에 동상이 설치될 경우에는, 아직 관리권이 대구시에 완전히 이관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홍철 위원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혜 위원 박상우 장관님, 무엇보다 그간 추진해 왔던 정책들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차질 없는 주거안정 그리고 주택공급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정상적인 규제를 완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는 선순환 구조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1기 신도시 재건축을 포함한 재건축 활성화, 주택공급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동의합니다.

○김은혜 위원 얼마 전에 이주지원 대책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분당을 포함한 1기 신도시 현장에서는 이게 선도지구를 포함해서 제대로 단지를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을까라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안감이 주민들 사이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몇 개 여쭙고 싶은데요.

실제로 지자체 그리고 민간 건설사의 참여 활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치적 상황도 그렇고 공사비가 폭등한 상황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인데요. 이를 위해서 정부가 진행 중인 12조 원 미래도시펀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미래도시펀드는 내년도 출시할 것을 목표로 해서 관련 금융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혜 위원** 무엇보다 공사비에서 금융 조달비용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드는데요. 몇 % 정도 현재 계획상으로 감소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미래도시펀드가 출시를 하면……

○**김은혜 위원** 되면 공사비의 금융 조달비용을 어느 정도 우리가 줄여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좀 곤란합니다마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은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비용을, 저희 의원실에 얼마나 절감이 가능할지 알려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케이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리고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혜 위원** 또한 1기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방안을 봤는데요. 그런데 SRT 복복선화 같은 구체적인 대책이 명시되지 않아서 지자체 건의 사업에 대해서 상위 계획 반영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내용으로 발표돼서 그 부분은 좀 궁금함과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SRT 복복선화 같은 충분히 논의된 1기 신도시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준비 상황, 향후 계획에 대해서 언급하실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사실은 저희 도로망 계획 또 내년 중에 다 발표하기로 돼 있는 철도망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른 노선들하고 다 연계 관계를 맺어서 확정이 되고 발표가 돼야 되는데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광역교통대책으로 그게 덜썩 먼저 나가면 굉장히 혼선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은 다른 시설 계획과 같이 조화롭게 가기 위해서 이번에는 큰 언급만 하고 구체적인 세부 노선은 발표에서는 뺏다는 말씀을 좀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혜 위원** 언제 발표가 가능하시겠어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게 지금 도로는 도로망 계획 또 철도는 철도망 계획 등이 내년 중에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구체적인 노선들이 포함이 돼서 발표가 될 겁니다.

○**김은혜 위원** 알겠습니다.

재건축 특례법 같은 거나 또는 재초환 폐지 법안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이라는 큰 정책 방향하에서 빠른 시일 내에 국토위에 계류돼 있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세부적인 부분을 보완해서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사안

들 바탕으로 저희가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더 따져 봐서 법안소위에서 잘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은혜 위원** 장관님, 그리고 전세사기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국정감사 때 질의했던 게 있었습니다. HUG에 변제를 해야 되는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채무불이행 상태에서, 즉 임차권등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는 제2의 빌라왕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지금 HUG에서는 사실은 이 채무 상환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새롭게 범죄를 꾸미고 있는 제2의 빌라왕들이 벼틸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을 들인 데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으로 처벌 조항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협조가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은혜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주택도시보증공사 유병태 사장님께 자료제출을 요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나오셨나요?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예.

○**김은혜 위원** 사장님, 지난 9월 현재 수도권에서 임차보증금 회수 절차가 진행 중인 8929채 중에 보증금 전체 회수가 된 게 6%, 547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이후 오늘 12월 23일 현재까지 수도권에서 진행되는 임차보증금 회수가 진행 중인 주택 수 그리고 전액 회수였는지 그 여부까지 포함해서 통계를 저희 의원실에 이번 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예, 알겠습니다.

○**김은혜 위원** 회수 진행 절차인데요, 국정감사 발표 이후에 전액 회수가 안 되더라도 일부만 회수해도 전액 회수가 된 것처럼 지금 HUG가 통계를 계속 부풀리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통계를 본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은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주택도시공사 사장님, 자료제출해 주실 때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다음, 박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 박용갑입니다.

장관님께서 12월 3일 날 잘못된 비상계엄 말씀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비상계엄에 동의하지 않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박용갑 위원** 잘못됐다고 말씀하셨지요.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없으신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박용갑 위원** 우리 국무위원님들이 소신 있는 분들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다 그냥 떠밀고 내가 안 했다, 나는 몰랐다, 나는 반대했다.

그런데 그때 박상우 장관님께서는 참석을 못 하셨다고 그러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박용갑 위원** 소신 있는 그런 국무위원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한덕수 총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권한대행을 하고 계시지만 그대로 비상계엄 전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직무정지가 돼 있는데 그 정책을 그대로 이어 가는 것 같아요. 조금도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직무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주택공급사업이라든지 2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는지 이것도 또 궁금합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사실 국토부 소관이지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국토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공동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용갑 위원** 그렇지요.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지방시대위원회가 그동안에 보니까 26번 회의를 했어요. 26번 하고 대면회의를 7번 정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방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그런 기관은 한 다섯 군데밖에는 논의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계획대로 되겠느냐?

올 11월 말에 1차 공공기관 이전한 것에 대해서 평가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내년 10월로 미뤄졌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연구평가 기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했는데요.

○**박용갑 위원** 의지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어쨌든 그……

○**박용갑 위원** 그래서 국토부가 지방시대위원회하고 함께해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방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올 11월 말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까 했는데 다시 또 내년 10월로 연기가 돼 버리니까 상당히 어떤 고통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거기다가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됐고 이렇게 때문에 이런 것을 사실 소신 있는 국무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장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통령 직무정지와는 별건으로 정부가 그동안에 선거라든지 또는 정책을 통해서 발표한 공약은 정부의 공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의 공약이기 때문에 대통령 직무와 무관하게 행정부에서는 그 약속들은 지켜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건도 그런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상 진행돼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추진하는 데는 굉장히 큰 정치적인 리더십과 또 안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일개 제 개인 입장에서 앞서서 나가기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다 하는 말씀을 위원님께 솔직하게 드립니다.

○**박용갑 위원**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무정지가 됐지만 이런 계엄을 생각하기 전에

국가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더 생각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장관님께서도 이것은 잘못된 계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대부분 국민들의 70~80%가 전부 다 잘못됐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언론에 보도가 되는 것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박용갑 위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잘못된 것을 그대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국무위원들이 어떤 책임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위원님 지적에 유념하겠습니다.

○**박용갑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기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기왕 위원** 충남 아산갑 복기왕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또 마음이 많이 불편하실 겁니다.

지금 정치적인 혼란이고 그리고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인해서 힘들다라는 말씀을 서두에 꺼내셨는데,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왜 된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계엄을 이유로 한 탄핵소추를 받으신 거지요.

○**복기왕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장관께서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잘못된 계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냥 대통령 직무정지가 아니라 위헌적·불법적 계엄 조치로 인한 대통령의 직무정지 그리고 지금의 정치적 혼란을 불러일으킨 당사자는 지금은 직무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다라는 것을 장관께서도 분명히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국무위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맥락이 맞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국토부에서 계엄 이후에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으실 텐데 저희가 제일 걱정되는 것은 경제 부분 아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민생이 제일 중요합니다.

○**복기왕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어요. 국토부에 경제 분야에 대한 환율 상승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현황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면)

저렇게 왔습니다. ‘해당 없음’ ‘추후 계획 검토’, 3개 부서에서 답변을 했는데 좀 성의껏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저런 답변에 대해서 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좀 시간을 주시면 면밀하게 분석해서 계량적이고 근거 있는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복기왕 위원** 이건 매우 시급하고 빨리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되는 것을 저희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게 하루아침에 네이버나 챗GPT에서 나올 수 있는 자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정확한 자료들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복기왕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라도 답을 주셔야지요. ‘해당 없음’ ‘추후 계획 검토’ 이것은 아니지요. 현재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라도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하고 다음으로 넘기면,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환율 정말 심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철근 자재 수입가격 상승하면 건설 경기, 기본적으로 비용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큰 타격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렇습니다.

○**복기왕 위원** 이런 것부터 해서 코스피는 일반적인 부분이라 그렇다 치고 대표적으로 건설사 시가총액 1위인 삼성물산 저렇게나 떨어졌어요. 전체적으로 4.45%가 떨어졌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라는 말씀하고 완벽한 계획보다 지금 당장 하루하루 임기응변식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빨 빠르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하고 전망하고 해서 빨 빠르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복기왕 위원** 조금 전에 박용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러한 때에 동대구역에 박정희 동상 설치를 강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한심한 노릇 아닙니까? 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복기왕 위원** 곤란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아니, 뭐 곤란할 것 없습니다.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복기왕 위원**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저희는 동의하지 않고요. 반대한다. 수차례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 산하기관인 철도공단과 같은 생각으로 철도공단에서.....

○**복기왕 위원** 우리가 ‘계엄’ 하면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떠올립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계엄을 선포했었고 그 계엄이 선례가 되어서 반복됐고 이번까지도 그런 비상계엄의 사태가 왔었고.

그다음에 내란과 군사반란은 5·16 군사 쿠데타를 이야기합니다. 비상계엄이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내란과 군사반란의 최초 시행자인 박정희 씨에 대한 동상을 동대구역에 설치를 강행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눈으로 바라보겠습니까?

더더군다나 흥준표 대구시장이 과거에 대통령후보로까지 나왔어요, 공당의. 그런 사람이 기관 간의 협조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 설치를 강행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장관께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주셨고 아까 철도공단 이사장께서도 최선의 조치를 다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깡패식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동상을 강행하려고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 향후에 대응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법률적으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철도공단과 함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기왕 위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그리고 위반행위에 대해서 일일 얼마씩 요청을 하고 하는 부분이 나오던데요. 국토부의 온 힘을 다 기울여서, 기관의 전력을 다 기울여서 이 문제가 조속히 정상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기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지금 복기왕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계엄에 따른 경제 위기에 대한 국토부 대비책 했는데 ‘해당 사항 없음’ ‘추후 검토’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렇게 답변이 나간 것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성의 있게 작성을 했어야 되고요.

○**위원장 맹성규** 아니, 성의 있게 답변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민생’ ‘민생’, 가장 힘들고 어려운데 자세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장관님, 어떻게 같이 직원들하고 논의해서 이 대비책을 마련하시겠습니까? 벌써 있어야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일단 큰 틀에서 부동산 시장과 건설 현장 그리고 교통 현장에 미치는 영향들을 빨 빠르게 분석을 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저희들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직원들 포함해서 관련 업계들하고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위원장 맹성규** 다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 포항 북구 김정재 위원입니다.

장관님,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금 건설 현장이나 주택 시장이나 다를 동토입니다. 굉장히 얼어붙어 있고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공무원들께서 좀 더 민생을 챙긴다는 각별한 각오로 일에 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그렇게 몇 자로 문제없다라고 하는 것 정말 무책임한 듯이 보입니다. 각별히 공무원들 잘 다독여서 함께 일하는 모습 좀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재 위원** 저는 오늘 지난 19일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6개 법안 중에서 우리 국토교통위와 관련된 자동차 항공 건설 등 여러 산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국회 증감법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국회 증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개인정보나 또 민감한 정보 그리고 기업의 영업비밀도 예외 없이 국회가 자료 요구를 하면 무조건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증인들이 예전에는 질병 부상 해외체류 등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불출석이 가능했습니다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것도 안 된다, 원격 출석이라도 해라 이래서 정당한 사유가 그 어떤 것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다음에는 동행명령의 범위를 예전에는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경우만 했던 것을 이제는 안건 심사 있을 때마다 또는 청문회 할 때마다도 무조건 나와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처벌 규정이 없었던 국회 출석이라든지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있는 신설 규정 마련했다는 걸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김정재 위원** 현재 이런 법이 굉장히 경제계에 미치는 타격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개정안에 대해서 아마 국무회의에서도 굉장히 고심을 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고 저는 보고요. 특히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국회 증감법에 대해서도 저도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경제계에서도 지난 16일 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이 이재명 대표를 직접 만나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비밀정보가 새 나가면 단순히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 정보가 퍼져 나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고 또 다행히도 이재명 대표께서 총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고 답변한 것은 그나마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제 6단체에서도 영업비밀 유출 또 기술 유출을 우려한 것 있고요. 재의 요구를 지금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회에서 산업통상부에 많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실제로 이게 기술 유출 문제가 돼 가지고, 매년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5년간 산업기술 유출 현황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총 111건입니다. 100여 건이 넘지요. 그중에서 36건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자동차 등 국가핵심기술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금액도 23조에 이르고요.

그리고 2017년에 모 의원님 방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 사용되는 장비 또 화학물질 이 정보를 요구해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게 법원까지 갔는데 법원에서는 비공개를 해야 된다라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을 비추어 보아서 증감법 개정안이 만약 시행이 되면 잘못하면 우리 국회가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을 유출하거나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하나의 통로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제가 이것을 보는 특별한 이유는 이번에 국가핵심기술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부분이 바로 자동차와 철도 관련이었습니다. 총 76개의 국가핵심기술이 있는데요. 반도체가 11개, 자동차·철도가 10개, 기계 8개, 조선 8개 등등입니다. 지금 우리 국토위와 관련되는 게 굉장히 많고요. 제가 지금 철도하고 방산 쪽으로도 의견을 물었는데 굉장히 우려하는 답변들이 많이 왔습니다. 나중에 제가 따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 오늘 말씀 좀 드릴 것은 지금 정부의 역할이 사실은 기업의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기업이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보호하고 서포트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법안으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걱정하실 게 많을 텐데 이 법안에 대해서 장관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대책도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재의 요구를 의결한 국무회의에 제가 참석해서 동의를 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법률 자체는 저희 국토부 소관 법은 아닙니다마는 적용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아마 이 법을 제안하시고 또 의결하실 때는 여러분들께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시는 여러 가지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라든지 또 아까도 어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고발 문제도 다루셨는데 이런 데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

드셨을 거라고 짐작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다만 그런데 법률이라는 것이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명확해야, 사실은 강제를 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상대방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최소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필요 최소한으로 다듬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정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다음, 손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수 위원** 장관님, 저도 존경하는 복기왕 위원님 또 맹성규 위원장님께서 아까 해주신 말씀의 연장선에서 좀 걱정과 함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건설산업 현장에서 정말 아우성입니다. 지금 몇 년째 PF가 막혀 가지고 건설산업이 어려웠는데 최근에 이런 비상시국까지 겹치면서 IMF 때보다 훨씬 어렵다 그리고 정말 이제 사업을 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가 심각합니다.

불확실성이 가장 문제고 자재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거기에 금융시장은 완전히 경색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건설산업 자체가 위기인데 여기에는 다 공감하시기 때문에, 국토부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도 있지만 인력 수급의 문제라든가 몇 가지 국토부가 의지를 가지면 건설산업의 어려움을 타개하는 데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토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아무리 어려운 시국이지만 행정이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손명수 위원**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부동산 시장이 걱정입니다. 지금 이게 다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주택공급이 엄청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몇 년 후에는 부동산 시장에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겁니다.

장관님 부동산 전문가시지만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국일수록 반드시 해야 될 이런 일들은 놓치지 말고, 그리고 이게 몇 달이 늦어지면 나중에 그게 누적이 되면 큰 눈사람처럼 커져 가지고 큰 충격으로 다가오잖아요. 굉장히 우리 민생 민생 다들 말씀을 하시지만 이런 구체적인 문제, 건설산업의 위기 그리고 특히 주택시장의 공급 문제 이것은 국토부 고유의 역할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각별히 챙기시고, 특히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존경하는 손명수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아까 저희 직원들이 답변 자료를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낸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송구합니다. 뭐라도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방향이라도 적어서 이렇게 하고 추후 보완하고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낸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조만간 빠른 시간 내에 건설업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곧 발표 단계까지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명수 위원** 저희 국회에도 필요하면 의논을 해 주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손명수 위원** 지금 굉장히 시급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아까 말씀하신 금융 PF 문제 또 공공 공사비 문제 또 인력 수급 문제 이런 것들, 우선 할 수 있는 것들을 추려서 하고 또 고환율이 지속될 경우에 대한 대책 이런 것도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명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철도공단 이사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좀 확인할 게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님 질의에서 동대구역 고가교 소유권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지금 그것이 공사 중 자산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국가철도공단에 있는지 또는 대구시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도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손명수 위원** 그렇게 좀 애매하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게 사실 전에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공단에서 여기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도 하고 또 일일 과정금 부과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근거가 뭐예요?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저희가 그 공사의 시행을 대구시에 위탁한 위탁자로서……

○**손명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소유권 문제가 국유재산이라는 것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다 국유재산이고 관리청의 문제잖아요, 그게. 그런데 지금 그 관리권이 협약에 따르면 준공 후에는 대구시로 넘어가게 되어 있다, 그런데 아직 준공이 안 됐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확인한 대로, 준공 전에 중요 시설물 설치는 반드시 사전 협의하라고 공문 몇 번 보내셨어요?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네 번 보냈습니다.

○**손명수 위원** 그러니까. 공문도 보내시고 한 그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애매하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준공 전까지는 관리 책임이 공단에 있다, 그것을 명확히 하셔야지요.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예, 그래서……

○**손명수 위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공문을 보내신 거고. 지금 이 비상시국에 정말 이런 것까지 논란이 되는 게 저는 참 유감스러운데 철도시설은 특히 국가시설 중에서 매우 중요한 시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단은 그 관리 책임자로서 역할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렇게 애매하게 ‘소유권이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

저도 협약을 보고 다 했기 때문에 지금 동대구역 고가교는 매우 특별한 케이스인 것은 이해를 했어요. 그렇지만 준공 처리가 되기 전까지는 관리 책임이 공단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명확히 하셔야지요. ‘논란이 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되고.

그래서 분명하게 하시고, 준공 이후에는 그게 관리권이 대구시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공단은 관리 책임이 없어지는 거지만 지금 현재는 공단에 있는 거지요.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예, 지금 공사 중인 시설물이라는 원칙으로 저희가 대구시하고 원만하게 최대한 협의를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법적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명수 위원**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동대구역뿐만 아니라 전국

에 많은 철도시설이 있잖아요. 지금 공단은 국토부로부터 그 철도시설을 위탁받아서 위탁 관리하는 국가 공단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책임 의식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예, 알겠습니다.

○**손명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정 위원** 안녕하세요. 부산 연제구 국민의힘 김희정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국토부장관님께서 가덕도신공항 거버넌스 협의체 참여하셔서 의지를 피력하신 점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여 개의 기관이나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향후 진행되는 데 있어서 일사불란하게 진행이 되지 않으면 이게 그냥 협약식에서만 끝나고 향후 효과가 미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참여기관 중의 제일 맏형이 국토부거든요. 그래서 신향만, 배후도시, 교통망 등을 통해서 이 파급효과가 확실하게 미칠 수 있도록 장관님이 정기적으로 점검하시고 또 국회에도 보고하시고 이런 것을 했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사실은 어느 공항이나 이게 다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 가덕도공항은 투자 규모도 크고 또 인근 광역지자체가 3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뭐가 이루어져야 효과가 극대화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중구난방으로 일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돈도 돈 대로 쓰고 효과는 미미하고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챙기겠다는 것이 지난주 행사의 목표였고요. 그래서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30여 개 기관의 가장 맏형이 국토부이기 때문에 점검을, 어떤 기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다른 기관은 또 딴 얘기 하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점검을 잘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튼 기관 역량 집결에 핵심을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김희정 위원** 다음은 전세사기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보고에는 빠진 부분인데요. 저희가 국정감사 때 논의했던 부분이라 정부에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도 다시 한번 좀 결의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감사 때 HUG의 보증계약 취소로 인해서 귀책사유가 없는 임차인이 보호될 방법이 없다라고 해서 저희가 힘을 모아서 법안을 소위 제안했고 우리 상임위에서는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서 사실 이 피해 세대 99세대, 피해액 126억 원에 해당되는 이분들이 지난번 국정감사 이후에 희망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지금 절망하고 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 먼저 정부의 준비 상황, 법안 통과될 것에 대비해서 여쭙고자 하는데.

HUG 사장님, 저희는 최대한 법안 통과에 신경 쓰겠습니다만 개정안 시행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새롭게 절차 밟으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이행청구 사전 접수

등을 하고 준비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말씀하신 대로 사전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99세대 중에서 현재 55세대에서 서류를 접수하여 가지고 26세대는 사전 이행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44세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안내하시고 아직 심사가 끝나지 않은 약 20여 세대에 대해서도 빨리 심사를 완료해서 방망이 두드림과 동시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정부는 이미 우리가 개정안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내일 마침 법사위가 열린다고 하고요. 내일 법사위 안건은 타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안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묻힐 가능성도 있고 다시 제2소위에 갈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가 급하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 차원의 명의로 내일 법사위에 우선처리법안으로 좀 해 달라는 조치를 함이 어떨까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예, 조치하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그래서 귀책사유가 없이 당했던 이 임차인들 그 돈까지, 참 그동안 마음 졸였는데 늦었지만 빨리 평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고 향후에도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저희 위원회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예.

○김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것 준비를 해 주세요. 저희가 법사위에 의견을 강하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님, 그 준비 사항은 좀 철저하게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다음, 송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관님, 장관님께서 말씀하실 때 12·3 불법 계엄, 위헌 계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12·3 계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굉장히 트라우마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중의 상당 부분은 사실 5·16 쿠데타하고 유신까지 이어진 그사이에 피해 보신 분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인데 그때 피해 보신 분들이 엄청난 트라우마를 갖고 있고 또 어떤 분은 자신의 아버지가 그때 피해 받은 것을 옆에서 봤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이 차마 정말 그럴 줄 몰랐는데 어렸을 때 그것을 보고서 굉장히 트라우마를 겪었다고 그래요. 장관님도 그런 점은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저도 비상계엄하에서 대학을 다녀서 잘 압니다.

○송기현 위원 그런데 대구시에서 하필 이럴 때 박정희 동상을 세운다는 것은 그 트라우마를 다시 한번 견드리는 것 아닌가요, 국민들한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어쨌든 그 철도와 철도역을 관리하는 부처의 장관으로서 막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또 적절한 조치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저는 지금 바로 하필 이럴 때 한다는 것에 대해서 대구시가 굉장히 부적절하다 생각합니다, 홍준표 시장도 마찬가지고.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박정희를 소환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이득을 보려고 하는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강하게 대처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심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동안 국회에서 영업기밀을 제출받아 가지고 누설된 그런 게 있나요, 국가기밀이나 이런 것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실지 발생한 사안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뭐라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법문의 내용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남용됐을 경우에, 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만들어 놓고 나면 이 자리에 계신 분만 쓰는 것이 아니고 후대까지 계속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제정할 때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해서 모든 후배들이, 뒤에 오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선의로 쓸 것이라고 장담할 수가 없는 게 법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보편적이고 타당한 그런 내용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요건을 엄격하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보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저는 찬성을 했습니다.

○**송기현 위원** 장관님도 필요성 인정하시지만 보완해야 되겠다 이 말씀이신데요.

저는 이번 국무회의 결정을 보면서, 특히 22대 국회에서 정말 예전과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은 것이 뭐냐 하면 자료제출에 대해서 이렇게 불성실하고 제출을 안 하는 정부를 본 적이 없어요. 21대나 20대에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아마 이 자리에는 그 이전에 국회에 계셨던 분도 계실 텐데 그분들 국회 생활하실 때 그때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희들은 20대에도 감사원 회의록도 제출받아서 봤습니다, 비공개로. 물론 공개를 안했습니다. 국회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어떤 방식을 찾아서 그 자료를 봤지 그것을 지금 22대 국회처럼 아예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못 본 것 같아요. 이것은 정부나 또 특히 대통령이 국회를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자세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무위원들께서도 그런 것이 너무 뿌리 박힌 것 같아요.

지금 자료제출을 안 했다 그래 가지고 바로 처벌하는 것 아니지요. 위원 한 분 한 분이 사실 제출 요구했다 그래 가지고 제출을 안 해서 처벌받는 것 아니거든요. 위원회가 결정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그때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위원회에 있는 위원회 전체의 집단지성이 정말 국가기밀이라든지 밖으로 유출될 그런 것에 대해서도 억지로 처벌까지 하면서 내라 그러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22대 국회 저희들뿐 아니라, 저희는 당연히 그럴 분이 아무도 안 계신다고 생각하고 이외에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그 정도의 국가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일하는 곳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받아도 자료를 얼마든지 비공개로 할 수 있고 그것을 공포하지 않을 그런 조건도 달 수 있습니다.

막연히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사례를 가정하면서 마치 국회의원들한테 자료 주면 그것이 다 유출돼 가지고 외국까지도 피해를 줄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위원 쿠팡 과로사 대책과 관련해서 그동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꾸준하게 지적해 왔고 늦게나마 진전된 안이 나온 것에 대해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노고에 감사를 일단 드리겠습니다.

클렌징과 관련해서 개선안이 나왔는데 미수행률 회수율 고객불만발생률 폴더율 등 이렇게 네 가지 요건에 대해서 구체적 수치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혹여 과로와 고용불안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저희가 잘 추적해서 풀로업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충분히 저희가 같이 풀로업을 해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감사합니다.

또 특히 이번 개선안 중에서 표준계약서에 분류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셨던 것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감사드리고.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분류 전담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되게 바람직한데 우선 좀 편리하게 하려고 분류작업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한다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계속 고착화되면 과로사가 계속 생길 가능성이 매우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어쨌든 한 회사에서 6명이나 되는 많은 소중한 인명이 희생됐다는 것은 원인 여하를 떠나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요. 그것을 저희가 잘 들여다봐서, 사실은 물류산업이 최근에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 전체에 내재돼 있는 SOP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게임의 법칙 같은 것을 다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서로 작동을 하고 만약에 비용이 더 들 것 같으면 그것은 소비자나 누가 또 감내해야 되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되는 거라서, 이것은 어찌 보면 신생 성장산업이기 때문에 새로운 SOP를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종오 위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사회적 대화도 좀 하고 또 앞으로 분류작업에 대한 이행점검 이런 부분들이 생물법에 담아졌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저도 법안을 발의했거든요. 신경을 써 달라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세사기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대책을 마련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전세사기 유형 중에서 다세대 공동담보에 대한 대책이 이번 보고에 빠졌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일단은 피해 안 당한 사람들도 같이 넣는 게 법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들어가지 않았는데 현실적으로 그분들의 주택도 같이 일괄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LH공사를 지도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하여튼 대표적인 사각지대인 만큼 대책을 세워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지난번 서울보증보험의 경공매 시에 은행이 배당 요청을 하도록 해서 피해자들의 고통이 계속 가중되고 있는데요. 이거 금융위 소관이기는 하지만 국토부에서 잘 챙겨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행 질권 설정하는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SGI가 특별하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를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좀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철도공단 이사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지금 동대구역 광장에 대한 법적 소유권·관리권, 등기부에 등재된 것 명확하게 공단 소관은 맞지요?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건설 중 자산이기 때문에 아직 등기는 안 돼 있고요.

○**윤종오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자꾸 딴 이야기를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문제될 게 이미 뺐했잖아요. 그렇지요? 예정돼 있는 문제잖아요. 그냥 하루아침에 생긴 문제가 아니고 동상 설치다 그랬으면 이것을 공문 보내고 가처분 신청하고 할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아까 대구시와 원만하게 협의하겠다고 하셨지요?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예, 그렇습니다.

○**윤종오 위원** 지금 공문 보내고 그만큼 했는데 안 하는 게 협의가 되겠어요? 이것은 그냥 강제로 철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했고요. 그것이 만약 그 이후에도 계속된다면 저희들이 동상 철거를 위한 가처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이미 설치를 못 하도록 막았어야 되는 게 맞다는 이야기예요.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공사를 수탁하고 있는 곳이 대구시고 공사 시행을 대구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 중의 관리는 대구시가 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일단 이 문제가 예전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게 맞고. 아니, 홍준표 시장이 이것을 자기 집 마당 앞에 설치했으면 무슨 제기를 합니까? 공공부지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 좀 적극적으로…….

지금 일단 설치돼 있는 것 맞지요. 그렇지요?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지는 않고요.

○**윤종오 위원** 설치됐으니까 지금 뭐 덮어씌워 놨다고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오후 2시에 한다며요? 빠른 시간 안에 철거 대책을 세우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청주시홍덕구 이연희 위원입니다.

장관님, 아까 자리에 연연해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이연희 위원** 그것은 책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뭐 그런 뜻으로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향후 국무회의에서 관련해서 필요한 일이 있으면 직언도 하시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이연희 위원** 지금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직무가 정지돼서 탄핵심판을 기다리고 있고 권한대행에 의해서 정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국정 안정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일은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동의합니다.

○**이연희 위원** 그런데 지금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에 의해서 헌법과 법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 관련한 통지문, 재판기일 이런 것들 일체 거부하고 있어요, 서류를. 압수수색도 거부하고 있어요. 소환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는데 이것이 국정 혼란의 가장 큰 진원지가 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국무회의에서 강력하게 준엄하게 경고하고 법치주의의 집행을 강력하게 국무회의에서 심의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럴 기회가, 논의되는 기회가 있으면 토론에 참여를 하겠습니다마는 국무회의에서 통상 그런 안건 내용들은 다 부의가 되지 않습니다. 않고, 사실은 국무회의 심의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이연희 위원** 아니, 국무회의에서 국정처리상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분석하고 평가하게 돼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가장 중요한 국정 아닙니까? 세상에 자기가 예전에 검사를 했으면서 법치주의·헌법을 지키지 않는 이렇게 추잡하고 파렴치한 행위를 본 일이 없어요. 대통령이 최소한의 품격마저 저버리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권한대행한테 직접 건의를 하세요. 아까 직언하신다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법상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불법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는 철거나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중에 불법건축물이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연희 위원** 저번에 대통령 관저, 국정감사에서도 나왔는데 대통령 관저에 여전히 불법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방치하실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위원님,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관련된 사항들 많이 질의도 주시고 답변도 드렸습니다마는 건축 허가 관련되는 사항은 자치체 자치사무입니다. 자치사무라서……

○**이연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임사무인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위임사무가 아니고 자치사무입니다.

○**이연희 위원** 국토부가 관리를 해야지요. 건축법의 주무 부서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 관저 이전 그리고 심지어는 계엄일까지 무속, 도사, 법사가 관여되지 않은 국정이 없어요.

화면 띄워 줘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대통령 관저에 저기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것까지 포함하면 약 5개의 불법건축물이 있는데 이것이 용산구청에 신고도 안 돼 있고 도대체 어떤 불법건축물이 돼 있는지 지금 아무도 확인을 못 하는 상태입니다. 도대체 저기가 무슨 치외법권 지역입니까, 아니면 불법 지역입니까? 어떻게 대통령 관저에 저런 불법건축물이 아직도 횡행하고 있고.

저 빨간 선 안에 있는 부분은 당시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이 ‘나무로 가려서 해라’ 이렇게까지 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 증언에 의하면 대통령실 벽면·천장에 무속과 관련된, 주술과 관련된 그림들이 구입돼 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윤석열·김건희의 행태를 보면 저 관저에 무속과 관련된 시설물이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관련한 제보들도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저 나무로 가려진 빨간 선 안에 무속과 관련된 시설물이 있다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 말씀해 보세요.

언제까지 이런 것을 방치할 겁니까? 지금 일반 국민들은 옥상에 불법건축물 하나만 해도 다 철거하고 놓막 하나 지어도 다 철거하고 과태료 받고 그런 상황인데 도대체 대통령 관저에 저런 의문의 건축물이, 불법건축물들이 있는데 저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 안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장관님, 저것 국토부에서 직접 현장조사 나가야 되는 것 아니예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일단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할 구청으로 하여금 오늘 위원님 질의를 바탕으로 확인 요청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위원장님께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나무로 가려진 저 불법건축물이 무엇인지 감사원도 감사에서 누락을 시켰어요. 뭘 감추려고 그렇게 쉬쉬하는지 모르겠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나가서 대통령 관저에 도대체 어떤 불법건축물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위원장님께 드리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우선 장관님, 이연희 위원님의 제기하신 문제는 지방자치 사무라 하더라도 관할 구청인 용산구청에 국토부가 충분히 별도의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질책이에요.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장조사 같은 간사 위원님들 간에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 위원** 서범수입니다.

장관님, 지난 비상시국 관련해서 18일 기자간담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주택이나 교통정책을 계획대로 일관되게 추진하겠다’ 그리고 ‘행정의 영역과 관련된 것은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서범수 위원** 비록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국민과 시장에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점에서는 적절한 조치였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특히 행정부가 중심을 잡아서 해야 될 일이 참 많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중요한 국정과제라든지 지역 현안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아울러 특히 각종 지역 현안 사업이 혹시 이것으로 인해서 좌초될까 여러 가지 지역에서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안정과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잘 좀 해 주십사, 특히 야당 설득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 경기가 어려울수록 여러 가지 규제도 좀 풀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재정 조기 집행과 아울러서 여러 가지 관계부처 협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동절기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건설이라든지 부동산 중심으로 지금 아마 국토부에서도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서 보고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일차 우선 급한 대책, 그동안에 쭉 해 오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발표가 있을 예정으로 있고요. 또 필요하면 더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발굴해서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9일 날 안동역에서 중앙선 고속철도 KTX-이음 완전 개통 행사가 있었습니다. 아마 장관님도 참석을 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했습니다.

○**서범수 위원** 국한해서 울산과 부산의 경우에 울산에 세 군데 그리고 부산의 경우에 일곱 군데를 KTX 정차역으로 신청을 했는데 지금 울산은 한 군데, 부산도 한 군데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지금 울산 한 군데, 부산 한 군데만.

○**서범수 위원** 그런데 고속철도를 만들어서 운행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입장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고속으로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서범수 위원** 그게 첫 번째 목적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발전도 좀 획기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게 지금 그런 목적에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고속철도를 만들어서 단기간에 빠른 시간에 이동 수단으로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 어떤 지역발전을 위한 하나의 계기로 만들겠다 이런 것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너무 교통만 생각하신다, 지금 교통만. 많은 지역에서 민원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는……

제2차관님, 제2차관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시는 게 맞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1차관님, 1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수단으로만 활용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물론 지역 간 연결하면서 지역의 균형발전이나 이런 것도 같이 고려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법수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한번 의견이라도 제시해 보셨습니까, 이 역을 결정할 때?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

○**서법수 위원** 그러면 당연히 장관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아니냐.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친다, 너무 한쪽으로만.

각 지역마다 KTX를 정차해서 우리 지역을 어떻게 어떻게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고 많은 분들이 지역 민원을 제기했고 또 그렇게 여러 가지 기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는 완전히 깡그리 짹을 잘라 버렸어요, 딱 한 군데씩만.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지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부에서는 우리를 완전히 배제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합니까, 이것?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장관이 결정합니다.

○**서법수 위원** 그러니까. 장관님이 완전히 지역을 무시하는 경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임시 개통 3회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서법수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내년 말부터 26년 초에 한 7편성이 더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되면……

위원님 질의시간 끝나면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그렇게 지금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냥 고육지책인데요. 하루에 세 편 가지고 어느 지역에 선다는 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법수 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내년에 한다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내년에 들어오면 그게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과 지역,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서울과 동남권을 빠르게 연결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 저는 그것보다도, 1번의 목적보다도 2번의 부산·울산·경남이라는 광역권 내의 각 지역을 빠르게 연결시켜 주는 그런 효과도 더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의 목적을…… 편성이 이제 7편 더 들어오면 10편성이 되니까 그리 되면 충분히 두 번째 효과, 어찌 보면 더 중요한 두 번째 효과가 더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미리 짜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법수 위원** 예, 잘 챙겨 주십시오.

○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태영 위원** 오늘 국토교통부가 현안보고에서 쿠팡 종사자들에 대한 근로여건 개선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아마 그동안 맹성규 위원장님 또 문진석 간사님 그리고 우리 국토교통위의 위원님들 이와 관련되어서 아주 깊은 관심으로 여러 차례 국토부와 논의를 하고 또 관련 이해당사자들을 쭉 만나 왔고요. 이에 대해서 국토부가 대부분의 요청사항들을 잘 수용해서 개선안들이 나왔고 이에 대해서 쿠팡노조라든지 과로사대책위 또 쿠팡 CLS 이런 데서 대부분 동의해서 수용해 준 것을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동안 애써 주신 장관님과 관련되는 부서의 직원들께 애쓰셨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또 몇 가지 아직도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이후에 확인을 꼭 장관님께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테면 쿠팡 CLS가 국토부의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는지, 또 배송구역 조정을 위한 아까 제기됐던 네 가지 기준이 타 택배사 수준으로 마련될지, 또 영업점 계약갱신에 쓸 새로운 서비스 수준 평가기준이 타 택배사 수준으로 가는지, 또 국토부가 이에 대해서 소분류도 명확히 택배기사 업무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이것을 표준계약서에 반영하겠다고 그랬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꼭 지켜지는지가 걱정입니다.

특히 생활물류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계약기간이라든지 위탁구역 명시 이런 것들 까지도 의무화시키겠다고 한 것이 있어서 저희가 이미 생활물류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이에 대해서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염태영 위원** 거기다가 지금 이와 같은 새로운 노동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심야택배 노동시장의 야간작업 환경 개선을 통해서 배송기사에 대한 업무환경 개선도 꼭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가 자신의 일처럼 나서 주시고 또 이와 관련된 택배사들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꼭 심야노동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하는 데까지 나서 주시기를 장관님께 부탁드립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아까 제가 답변에 말씀드렸지만 어찌 보면 택배는 오래된 품목이기는 하나 심야배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국민생활에 광범위하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들은 어찌 보면 새로운 물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법 개정 중에 과정을 통해서 국민적 합의를 만드는 그런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염태영 위원** 그래서 그동안 그 큰 갈등 또 쿠팡으로 인한 과로사 문제의 진전을 이루게 된 것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이후에 수용한 것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가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창원산단 선정과 투기 의혹에 대한 관련 건입니다.

첫 번째 사진,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표시된 여기가 창원시가 경남도를 통해서 국토

교통부에 국가첨단산업단지로 요청했던 부지고요. 최종 결정은 저기 보라색으로 된, 최종 선정 후보지가 됐습니다. 아마 이 내용은 장관님께서 이미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2022년 11월 23일 국토부 실사할 때 명태균 씨가 안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1·2·3부지를 안내했는데 최종 선정은 또 보라색이 됐어요. 103만 평 부지인데 국토부가 그전에는 실사를 했는데 최종 후보지가 결정된 곳에는 실사를 했는지, 사실 현장을 보지도 않고 선정한 것은 아닌지 하는 것에 대한 의혹이 있는데 장관님 그때 실사를 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제가 보고받기로 저희 부 직원이 아니라 아마 관련 연구원의 연구원들이 간 것으로 아는데 잠깐만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염태영 위원** 한번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염태영 위원** 두 번째, 제가 그때도 국감 시에 이와 같은 충대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위해서 국토교통부가 인근 토지거래내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정보 유출로 인해 투기한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했는데 저희는 국토부에서 자료를 하나도 못 받아서 결국 등기부등본을 별도로 저희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의 투기 의혹을 확인했는데 실제로 그 이후에 국토부가 이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담당 실장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입니다.

일단 먼저 현장 방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 방문은……

○**염태영 위원** 제한시간이 있어서 끝나고 함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사진 하나 보시면 2023년 3월 15일 발표를 한 이후에 한 달 후에 제주도 별장에서 관련된 사람들이 축하파티를 하는데 그 사진을 제가 지난번 국감에서도 보여 드렸어요. 이 안에서만 해도 지금 두 사람이나 그 해당되는 부지에 대한, 2023년 3월 15일 한두 달 전에 부지를 매입하고 그중의 일부는 또 팔기까지 해서 두 배의 차익까지 봤어요. 이런 것들이 이미 언론을 통해서 다 나왔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그 문제 지적할 때 ‘전체적인 산업단지 선정 프로세스를 짚어 보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 그런데 현재 엄연히 땅투기가 이루어졌고 이익까지 본 사례까지 이렇게 나왔고 실제로 그 관련되는 당사자들이 저렇게 노골적으로 다드려났는데도 불구하고 국토부 계속 이것을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 이에 대해서 강력한 국토부 차원의 대응책과 점검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장관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이상주** 국토도시실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장 방문에 대해서 국토부 직원이 동행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도 그 당시에 선정을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지자체로부터 제안서를 접수를 받았고요 그 이후에 평가단이 구성되었습니다. 평가단이 구성되어서 현지에, 현장 평가를 위한 현장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게 11월 달에 이루어졌는데요. 그 당시에는

국토부 직원이 한 명도 동행을 안 했습니다. 그것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 이외에 국토부 담당 직원이 평가를 위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현장 방문 차 담당 국장이 두 군데 지자체에 대해서, 창원과 익산 현장에 한 번 현장을 방문한 바 있었고요. 정리하자면 국토부 직원이 최초 평가할 때는 가지 않았고 개별적인 현장 방문조사를 위해서 담당 국장이 한 번 방문을 한 바는 있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창원산단 관련되어서 지금 국토부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아까 화면에 나왔듯이 후보지입니다, 후보지. 지정이 된 게 아니고 후보지인 상태고 후보지 지정 단계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돼서 창원지검에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수사의 결과가 나오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투기 의혹 같은 것이 팩트로 확인이 된다면 후보지 자체가 철회가 되는 겁니다. 저희는 죽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런 프로세스를 진행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염태영 위원**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위원장 맹성규** 예, 마무리하시지요.

○**염태영 위원** 저희는 지금 후보지를 철회하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명확하게 불법적인 요소들과 그로 인한 땅투기의 실제적인 현상들이, 실제적인 결과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토부가 철저히 조사를 해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해서 만약에 드러나면 철회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염태영 위원** 그뿐만 아니라 11월부터 12월까지 창원지검에서 계속적으로 경남도청과 창원시청 압수수색도 하고 관련되는 공무원들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국토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실사를 했다는 것이 언제언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실사했는지 자세히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현재 드러난 땅투기 대상자들은 어떻게 처리할 건가까지 같이 그 조사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따로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윤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균 위원** 장관, 내란 계엄 사태로 혼란스러웠던 12월 5일부터 11일까지 철도노조 파업 진행된 것 알고 계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윤종균 위원** 핵심적인 이유 중의 하나가 임금동결과 체불 원인이 된 성과급 문제 관련해서 당시 노사가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중재로 내년에 정부가 참여하는 연구용역을 통해서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사태 해결에 애써 주신 국토부 감사드리고 또 백원국 차관님 수고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장관님, 그런데 이 철도 파업과 관련해서 진행 중에 관련 보고를 받고 대책을 제시하거나 하신 게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일단 철도 파업은 노사 협상에 관계되는 문제고요 제가 그 협상에 직접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비상수송대책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수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종군 위원** 그러면 이번 철도 파업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시도 장관 입장에서 전혀 하신 게 없으세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 협상 과정에 제가 뭐 지시를 하는 것은 사실은 적절하지 않은.....

○**윤종군 위원** 아니, 코레일하고 또 얘기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직접 노조에다가 얘기하는 안 하더라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어쨌든 저희의 소임은 파업이 발생되면, 물론 파업 전날까지 협상 중에는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서 가급적이면 파업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하시오라고 기관장에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윤종군 위원** 하여튼 내일모레 파업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도 노조나 사측도 만나고 그러는데 국토부가..... 노사 문제이기는 하지요. 그러나 국토부에서 관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코레일도? 국토부 업무 태도에 대해서는 좀 실망스러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란 계엄 사태에서 국민 불편에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철도 파업인데 기재부와 협의 이런 걸 내세워서 형식 논리에 얹매여 가지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비상 상황이면 국민들 불편을 미리 찾아서 해결하는 적극적인 행정 이런 것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장관께서 앞으로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유념하겠습니다.

○**윤종군 위원** 그리고 한국국토정보공사 기관 효율화를 위한 지부 통폐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번 국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기관의 지역조직 통폐합 문제는 효율성 논리로만 따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LX 노조 또 평직원들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조직 통폐합에 큰 우려를 표하고 있고 최근에는 은평구청이나 기존에 LX가 있었던 자자체도 효율성만 따지지 말고 주민편의 등 다양한 가치를 함께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LX에 요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알고 있습니다.

○**윤종군 위원** 어떤 방향은 좀 잡히셨나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아마 LX 사장이 효율적으로 조직을, 누구든지 공공기관장이 되면 자기가 맡은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게 지역주민의 불편이나 또는 지역 간의 역차별 문제 같은 것이 제기되면 또 다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같이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종군 위원** 국감이나 여러 차례 제기를 했는데 요새 관련된 기사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LX 인천본부가 위기다, 백령도 주민이 민원 때문에 수원까지 가야 된다 이런 기사들이 요새 지역지를 중심으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LX 경영진의 조직 통폐합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주고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장관께서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공공서비스 제공을 기본적인 소임으로 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최대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조언하겠습니다.

○**윤종군 위원** 다음으로 발포 플라스틱 단열재 관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국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보온효과가 1시간도 못 가는 보온병하고 하루 종일 가는 보온병이 있다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하루 종일 보온효과가 유지되는 보온병을 쓰겠지요. 이게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계속 수년째 방치되고 있어요.

단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또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정할 때 단열재가 생산된 지 180일이 지나서도 단열 성능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런 단열재 장깃값을 반영하자, 그렇게 해서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도 높이고 탄소도 절감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자 이게 제 주장의 핵심이거든요. 이 논리에 잘못된 논리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윤종군 위원** 나름대로 전향적인 조치가 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25년부터 29년까지 적용되는 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이 내용이 반영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자꾸 이 일이 진행이 되다가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이런 과거의 사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관께서 각별히 국·과장에게 단단히 지시를 내려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적극 수용해서 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안에 반영하는 쪽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군 위원** 이 단열재 너무 상식적인 얘기 같은데 더 이상 국감이나 상임위에서 거론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에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윤종군 위원** 그리고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 신축 매입임대를 내년까지 수도권 중심으로 11만 호 이상 공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 LH 이한준 사장도 지난 9월에 ‘내년까지 5만 호, 6만 호 해서 11만 호를 사들이겠다’ 이렇게 호언장담하셨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이게 연말까지 가능하겠냐, 5만 호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올해 12월 17일까지 실제 매입한 게 3만 1000호밖에 안 돼요, 3만 1000호.

이한준 사장님, 이것 통계 틀린 겁니까? 맞는 거지요?

그냥 답변만 해 주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현재까지는 맞습니다마는 저희가 12월 31일까지……

○**윤종군 위원** 아니, 앞으로 열흘 남았는데 2만 호가 가능해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1만 2000호는 추가 확정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윤종군 위원** 열흘 만에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예, 지금 이미……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심사 통과된 것들이, 마지막 가격 협상하는 것들이 한 7만 호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시간 많이 걸리는 프로세스는 다 통과된 게 7만 호가 되겠고요.

○**윤종군 위원** 그때까지 지켜보겠고요.

올해 5만 4000호가 목표량이었는데 남은 10일 동안 2만 호가 달성될지 모르겠지만 최

근데 5년 동안 보면 2019년에 2만 4000호, 20년에 2만 호, 21년에 2만 8000호, 22년에 1만 6000호 매입이 됐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윤종군 위원** 평균 2만 호밖에 못 했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가 적극적인, 과거에는 매입임대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었는데 금년에는 상황이 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윤종군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예.

○**윤종군 위원** 그러면 어쨌든 나머지 2만 호 중에서 1만 2000호는 연말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예, 그렇습니다.

○**윤종군 위원** 그러면 8000호만 누락되는 거네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예.

○**윤종군 위원** 그러면 내년에 6만 7000호 매입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도?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윤종군 위원** 충분히 가능해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예, 왜냐하면 금년에 6월 달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연중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매월 한 2만 호 이상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종군 위원** 그러면 최근 5년 동안 평균 약 2만 호 정도밖에 매입이 안 됐었는데 이렇게 올해 급격하게 늘어난 어떤 다른 대책, 올해 특별한 그런 대책들이 있었던 거예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예, 과거 21·22·23년도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주택 착공 물량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저희가 정부와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비아파트 매입을 활성화시키자 이런 기조 아래 금년 6월부터 시행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그 후로 수도권에 한 100여 명 이상의 인력을 추가 투입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성과가 나온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종군 위원** 올해 8000호는 안 될 것 같은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내년에 목표 물량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군 위원** 제가 자꾸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집 없는 서민들이 정부의 주택공급계획,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 이런 걸 보면서 이사 계획도 세우고 내 집 마련에 대한 계획도 세운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정부의 목표 물량 제시 이런 것은 굉장히 예민하고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5년 동안 통계만 봐도 그런 데서 굉장히 많이 미달이 됐잖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예, 그렇습니다.

○**윤종군 위원** 그래서 이런 정말 반토막도 달성 못 한 그런 해도 있던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택 당국에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차질 없이 목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저희 국토부도 LH와 함께 위원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종군 위원** 예.

.....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위원** 저는 박상우 장관의 국무위원 직무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기 때문에 국무위원의 역할과 중요성이 훨씬 커졌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소영 위원**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국무회의 심의 대상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이소영 위원** 윤석열 내란 특검법,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관은 이 특검법에 대해서 어떤 입장 가지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죄송하지만 특검법은 제가 정확하게 공부를 못 했습니다. 못해서 그건 따로 시간을 두고 한번 입장 정리를 해 보겠고요.

○**이소영 위원** 장관님, 12월 3일에 일어났던 불법 계엄 사태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 불법 계엄 사태에 대해서 지금 경찰 검찰 공수처 군검찰이 각자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검찰에 대해서는 윤석열이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신이 있는 상황이고요. 또 많은 장성급 군인들이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군검찰도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소 권한이 지금 현재 법률상으로는 검찰과 군검찰에만 부여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특검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국민적 여론하에 국회가 재석 283인, 찬성 195인으로 통과시킨 특검법입니다.

더 공부하실 내용이 있을까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총론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특검 검사를 누가 추천하느냐 하는 내부 각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재의 요구할 때 보면……

○**이소영 위원** 장관님, 복잡하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 내부 내용이 세부 내용이 위헌적이다, 법률에 맞지 않다는 내용이 주로 재의 요구의 사유였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총론적인……

○**이소영 위원** 아니, 국무위원으로 보시기에 지금 이것 검사를 누가 임명하고 검사 몇 명으로 임명하고 이런 것까지 검토해서 찬반 의견 내실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내

란 행위가 제대로 수사돼서 엄벌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제대로 수사되고 제대로 된 판단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소영 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짓밟고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가장 엄정한 수사 방식이 적용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못 하십니까? 당장 내일 올라올 수도 있어요, 이 거부권 행사 여부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컨대 국회에서 표결할 때 반대하신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또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하고 생각 같은 분들만이 꼭 진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세부 내용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죄송한 얘기지만 충분히 공부를 못 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소영 위원** 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검토 중입니다. 의견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소영 위원** 이번 김건희 특검법에는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도 대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토부는 무슨 돌림노래 부르듯이 국회가 1년 넘게 팠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 이런 얘기만 반복해 왔었고요.

그런데 모두가 아시다시피 국회는 아무런 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지요. 그저 국토부에 자료 요구하고 한정된 제공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는 것 말고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국정조사도 정부 여당이 반대해서 진행하지 못했고요. 감사원이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통화 내역이라도 한번 확인하고 용역사 압수수색이라도 한번 해서 결론이 났으면 아마도 수긍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지금 수사가 없어서 어떠한 것도 실체를 확인하지 못한 미제 사건에 해당합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이런 찜찜한 사안, 많은 국민들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소영 위원** 질문 끝나고 답변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이소영 위원** 많은 국민들이 국정조사와 특검 필요하다라고 응답해 왔던 사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오빠, 모친 최은순 씨 이런 분들 통화 내역도 확보하고 용역사가 인수위 관련자와 당시에 통화 내역이 있는지, 뭔가 지시를 받았는지, 그 이후에 부당한 이익을 받은 것은 없는지, 강제수사를 통해 제대로 확인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거부권 행사 여부가 국무회의에서 논의되면 어떤 의견 내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일단 그 법안이 사실은 재의 요구할 때, 면접번에요. 이번 것 말고 면접번 회의할 때 주로 재의 요구 사유로 국무회의에 보고된 내용이 특검의 필요성 여부가 아니었고 특검법이 가지고 있는,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검사 추천권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당시 법무부장관이 보고한 내용으로 제가 이해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정말로 치유되지 않고 그런 것들이

클리어하고 페어하다면……

○**이소영 위원** 장관님, 끝까지 옹호하고 두둔을 하시는 테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페어하다면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소영 위원** 장관님, 국무회의는 국가 최고의 정책심의기관이고……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시된 의견들이……

○**이소영 위원** 국무위원들의 양심과 전문적 의견을 통해서 대통령이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책임을 지는 헌법기관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왜 야당 위원님들은 그렇게 제시된 의견들은 하나도 재고를 하지 않으십니까?

○**이소영 위원** 장관님은 그 헌법기관의 구성원이었고요. 그 헌법기관이 제대로 된 보좌역할을 하지 못해서 대통령이 2년 반 동안 내리막길만 걷다가 이제 결국 내란범까지 됐습니다. 어떻게 아직까지도 아무런 반성이 없으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마지막까지 옹호하고 두둔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제가 아까 모두에 국무위원으로서……

○**이소영 위원** 쓴소리 한마디 하는 국무위원이 없어서 정권이 이 지경이 됐어요,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국무위원으로서 제가 도의적 책임을 지고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소영 위원** 계속 그런 특검법이 수사의 필요성이 어떠니……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 수사의……

○**이소영 위원** 특검이 어떠니 잘 알지도 못하는 말씀하시면서 두둔하시다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제가 답변 좀 하게 해 주십시오. 아까 질문할 때는 답변하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답변 좀 하게 해 주십시오.

○**이소영 위원** 이제 답변하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제가 이해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 요구 사유는 특검이 불필요하다는 내용이 아니었던 것으로 이해하고요. 특검법이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검사 추천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법무부장관이 보고한 특검 재의 요구안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야당에서 진정으로 특검을 하고 싶으시다면 국무위원이 제기한 그런 내용에 대한 치유를 해서 다시 한번 다른 대안을 만들어 보실 생각은 왜 없으십니까?

○**이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저도 국무위원으로서 정치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은. 행정각부 장관으로 국토교통부 행정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고 싶은데 자꾸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저도 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이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맹성규** 다음, 황운하 위원님.

○**황운하 위원** 황운하 위원님입니다.

불법적인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인해서 총체적으로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초래된 상황에서 국무위원 직책을 수행하셔야 되니까 저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하지만 국무위원은

최고위직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이 되고 지금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다 보니까 국무위원이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적 판단만 하는 데 머무를 수가 없고 이른바 영혼 없는 공무원 수준에서 머물 수가 없고 부득이하게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어떤 정치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황운하 위원** 지난 18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장관님은 비상계엄에 대해서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다시 없을 줄 알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소회로.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진심입니다.

○**황운하 위원** 예?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진심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황운하 위원**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다시는 없을 줄 알았다 이런 말씀의 근저에는 지금 상황에서 비상계엄 이게 요건에 맞나, 헌법에 어떻게 규정돼 있고 법률에 어떻게 규정돼 있는지 자세히 모른다 하더라도 요건에 맞나 이런 의문이 들었던 거지요. 그런 건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요건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아실 테고요.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지고 있지 않은 대통령으로서 뭔가 또 엄청난 다른……

○**황운하 위원** 특별한 정보가 있었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정보가 계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황운하 위원**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었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황운하 위원** 내가 모르는 특별한 상황이 있나, 특별한 정보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황운하 위원** 그런데 알고 보니까 특별한 정보는 있지 않았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황운하 위원** 특별히 들은 것은 없지요. 장관님이 모르는 국가의 특별한 국가안보 사항이나 특별한 위협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고.

만약에 다시 그때 상황으로 돌아가서,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국무위원들에게 통보하는 그 자리에 참석을 못 했었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황운하 위원** 그런데 만약에 참석했더라면,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일부 장관들께서는 대통령에게 가서 이것 안 된다라고 적극 만류하셨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장관님도 거기 계셨다면 그렇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있지도 않은 일을 가정으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마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당연히 반대를 하고 그 자리에서도 반대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황운하 위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시간이 별로 없어서 부동산 관련 말씀 좀 드리

겠습니다.

어쨌든 부동산시장에도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지금 PPT를 안 띄웠나요?

(영상자료를 보면)

장관님께서는 주택시장의 상황이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집값이 아주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고 또 거래량도 반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여전히 안정적이라고 한 것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보통 우리가 안정적이라는 표현을 쓰면 가격이 상승하는 게 아닐 때를 안정적이라는 말을……

○**황운하 위원** 예?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 때를 안정적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여름에 서울의 아파트 값 오른다고 굉장히 이 자리에서도 많이 걱정도 하시고 하셨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칫하면 거꾸로 마이너스를,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될 상황입니다.

○**황운하 위원** 지금 가격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거래량도 반의 반토막으로 줄고 이런 건 맞아요, 이런 상황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0.01 0.02 정도 이런 변동은 그래프를 보면 굉장히 차이가 나게 보여서 그러는데……

○**황운하 위원** 그런 의미? 오케이. 그러면 거래량이 줄었다는 것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거래량이 줄었다는 것은 유의해서 봐야 될 사항입니다.

○**황운하 위원** 예?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유의해서 봐야 될 사항입니다.

○**황운하 위원** 그게 반의 반토막이 났다 이러던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게 평균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인지 하는 것은 따져 봐야 되는데요.

○**황운하 위원** 그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평균 대비해서 지금……

○**황운하 위원** 좀 위험한 신호로 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아직까지는 아닌데……

○**황운하 위원** 아직까지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예의 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황운하 위원**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황운하 위원** 위원장님, 1분만 주세요.

○**위원장 맹성규** 예, 추가로 쓰세요.

○**황운하 위원**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때도 거래량이 3분의 1 토막 났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탄핵 정국은 그 당시 상황보다 환율도 높고 금리도 높고 해서 부동산시장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실제로 집을 사려는 사람은 없고 팔려는 사람

들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이룩한 민주주의와 경제 이런 것이 한순간에 주저앉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다 느끼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관님께서 어려운 시기에 국무위원 직책을 맡으셔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보신주의보다는 정말 비상한 각오로 특히 국회와 협력을 많이 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그렇게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운하 위원** 입장을 좀 말씀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동산시장의 가격 변동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를 보면 3개월 정도 확 거래량도 줄고 위축돼 있다가 조금 회복을 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그 패턴으로 갈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율이라든지 다른 외생변수도 지금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많이 갈지 더 오래갈지는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걱정스럽고.

사실 여름으로 생각하면 부동산 부양책을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지금 서울하고 수도권은 시장이 많이 구분돼 있고, 비수도권 지방은 연초부터 굉장히 저조한 상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하고 다르게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시장이 안정적으로 급등도 없고 급락도 없이 가도록, 사실은 급등도 위험하지만 그것은 심리적인 문제 이런 게 더 크고 급락을 하면 바로 내 손에서 부도가 나오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더 경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잘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운하 위원** 특히 국회와 소통을 잘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황운하 위원** 대통령 직무정지 기간 중이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안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준 위원** 경기 광주시을 국회의원 안태준입니다.

24년을 마무리하는 전체회의입니다.

장관님을 비롯한 국토교통부 공직자 여러분, 올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특히 불법적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매우 혼란스러운데 국민 주거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장관님, 주택정책이 매우 어려운 분야잖아요. 경제·사회·정치적인 요소가 함께 얹혀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균형 잡힌 접근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복잡하고 가장 도전적인 정책 분야라고 평가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시장하고 정부의 균형 조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도한 개입을 하면 시장을 왜곡한다는 소리를 또 듣게 되고 부족하면 문제를 방치한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매우 필요한 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일단 공급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태준 위원** 저는 올해 국토교통위 위원으로서 주택공급과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대한 만큼 그리고 국토부에서 계획한 만큼 공급량을 달성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는 느낌은 드는데요. 그런데 11월과 12월 집계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질의는 내년 업무보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엽적인 문제 하나만 묻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지난 11월 17일에 ‘사회초년생을 위한 안전한 전세계약 교육 영상’이라는 것을 배포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알고 있습니다.

○**안태준 위원** 주거 수요가 많은 연말연시에 맞춰서 제작한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총 세 편으로 구성을 했는데 제일 짧은 게 한 편에 45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누가 보겠어요? 사실 볼 엄두가 안 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그냥 만들어서 교육하겠다고 해 놓은 거지.

이게 지금 보니까 첫 편은 4만 6000회, 두 번째 편은 3만 2000회, 3편은 1만 6000회 조회 기록했고요. EBS에서도 돌렸는데 세 편 평균이 1만 3000회 정도입니다. 많이 봤다고 또 하실 수도 있겠지만 50분 동안 이것 보고 있을 사람이 없어요. 요즘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1분이 넘으면 안 본다고 그립니다. 그러니까 사오 분 이내로 좀 잘라서 중요하게 편수를 만드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은 예산을 얼마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안태준 위원** 그리고 오늘 보고에서도 확인을 했지만 사기 유형을 보면 건물 매입 혹은 건물 신축과 임대차를 동시에 진행한다거나 무자본 캡투기를 하는 경우가 48%로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는 그런 내용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제안드리고요. 꼼꼼히 한번 챙겨 봐 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매월 발표하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보도자료를 보면은요 피해자들이 대출받은 금액을 여전히 지원했다. 지원받은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피해자 단체에서는 마치 자기들이 대출받은 금액을 국토부가 지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집계하지 말아 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환대출 3553억, 분할상환 3056억, 보금자리론 및 디딤돌 대출 2252억 이런 것들이 지원입니까, 대출입니까? 물론 정책적으로 대출 지원을 한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피해자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정부가 지원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대출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것도 ‘했네. 했습니다’ 하지 마시고 실제로 잘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이 매월 1954건 접수돼서 1421건씩 인용되고 있습니다. 연 1만 6000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매입계획을 보면 7500세대를 매입하겠다

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행하는 특별법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예상을 하고 한 것이냐면 피해자 전원 우선매수권 사용을 전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500세대를 매입을 하겠다, 이것은 물론 정책적으로 평균을 낸 것일 수는 있겠지만 자칫 회복기간이 너무 길어질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시간은, 이학재 사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지난 국정감사에서 저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이 4단계 확장시설 인력 확충 계획이 턱 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리고 상생협력처장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정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4단계 확장시설 중 일부에 대해서 민간위탁 시범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국회와 언론에서 논란이 되니까 최근에 철회를 했고 상생협력처장에 대한 인사 조치 요구에는 아직도 답이 없습니다. 먼저 이것에 대해서 사장님의 태도에 큰 유감을 표현합니다.

이 4단계 확장시설 인력 확충 논란을 살펴보면요 인천공항공사가 계속 말을 바꾸는 거예요. 사장님이 공사 직원들한테 임원들한테 농락을 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국회가 인천공항공사에 농락을 당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사장님의 경영 능력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력 확충 논란의 핵심은 숫자에 있다고 보는데 공사에서는 25년 4단계 확장시설 소요 인원은 234명 그리고 234명은 전체 시설 중의 일부 시설만 운영할 것이다 이런 숫자라고 했는데요. 노조가 경고 파업을 실시할 때 1135명 충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어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애초에 이런 계획을 밝히지 않았으면 노조가 1135명을 제기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거꾸로 보면 오히려 노조의 파업을 부추긴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을 솔직히 해 봅니다.

제가 시간 때문에 그냥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구멍가게도 아니고요 4조 8000억을 투입한 시설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요. 이 인력 확충 논란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다시 한번 꼭 살펴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토부가 즉시 감사에 착수하는 등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장관님께서는 이것을 좀 검토해 주시고요.

이학재 사장님께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인의 경영 능력에 대해서, 경영 방식에 대해서 반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학재 사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장관님께서는 감사 착수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제가 경영 능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천공항이 4단계 확충한 것은 1억 600만 공항으로 만든 것이고 1억 600만은 언제 도달하냐면 2033년 정도에 도달합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도달합니다. 4단계 확충을 했다 하더라도 3단계 시설에서 4단계로

넘어온 그 시점에서는 어제하고 오늘하고 여객의 양은 비슷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회사에서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회사는, 어떤 집단이든지 간에 인력을 요구할 때에는 보다 충분한 인력을 요구하고 서로 협상의 과정에서 그것이 조율이 되는데 자회사에서 인력을 요구한 것은 한 7월 8월경이었습니다. 실제로 인력 확충과 관련돼 갖고는 보통 10월이나 11월쯤에 조율이 되는데 이미 일찍 그것을, 자회사에서는 4단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인천공항공사하고 협의되지 않았고 또 노조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태준 위원** 공항공사에서 그 방식을 밝히지를 않았어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제가 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식이 아닙니까, 상식이? 위원님도……

○**안태준 위원** 아니, 단계적으로 해 놓고 단계적 인력 요구를 안 하셨다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4단계 한다고 해 갖고 이게 1억 600만 원이 금방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하나, 자회사에서 이것과 관련돼 갖고 여름에 파업도 하고 했지만 그것이 사실 가장 성수기 때 파업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것은 협상의 우위를 점유하기 위해서 그 시기를 택했던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파업이 있다 하더라도 여객에 불편을 끼치지 말아야 된다 해 갖고 사실 다 나가서, 저도 나가서 화장실 청소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 해소가 됐고요.

이 용역과 관련돼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용역은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된 것이냐 하면 자회사 체제가 들어온 지 한 7년에서 5년, 연차적으로 됐기 때문에 그 정도 됐고 또 지금 굉장히 빠르게 기술이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대 상황에 맞춰서 자회사의 운영에 대해서 한번쯤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 갖고 나온 대안인데, 물론 대안에 대해서 전문화하고 다변화하라는 대안이 나왔지만 이러한 대안은 결국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야 시행이 가능한 건데 국토부는 지금 현행 유지가 바람직한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당장 시행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안태준 위원** 당장 시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당장? 지금 미뤘다는 거지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아닙니다. 국토부에서 그것과 관련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태준 위원** 다음 기회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이 문제는 국토부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제도나 이런 운영하는 방식을 임의로 바꿀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석 위원** 위원장님, 오늘이 국토위 마지막 전체회의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예, 금년은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춘석 위원 알겠습니다.

장관님, 좀 전에 존경하는 이소영 위원님 질의에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이춘석 위원 제가 한 가지 장관님한테 충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시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란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이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내용이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라고 법무부장관한테 보고를 받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고 국회에서도 그런 것을 시정해서 법을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이춘석 위원 자, 이게 일반 특검법 같으면 장관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통령과 직결되는 사건입니다. 내란 특검법은 대통령이 내란 수괴로서 책임을 묻는 것이고 김건희 특검법은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에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면 특검법의 내용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런 형태로 나온 것이고.

이 특검법이 이번에만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사저에 관한 특검법도 대통령과 직접적인 관련이 됐기 때문에 그때도 추천자가 야당이 추천했고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때 이명박 대통령은 그것을 수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특검법도 마찬가지고 김건희 특검법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대변하는 법무부장관이 그 주장을 하니까 국무위원으로 앉아 계신 장관님께서는 ‘아, 법무부장관이 얘기를 하는 것은 맞는가 보구나’ 이렇게 말씀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충고의 말씀을 드리는 것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례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대통령과 대통령 영부인에 관련된 특검이기 때문에 기존의 일반 특검법의 논리로 주장하는 법무부장관이나 국민의 힘 쪽 주장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시겠다고 생각하셨으니까 그 부분 감안하셔서 다음에 국무회의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국토위에 온 지 7개월 됐는데요. 제가 소회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부가 엄청 힘센 기관입니까, 장관님? 국토부가 엄청 힘센 기관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춘석 위원 저도 법사위에서 간사 3년, 예결위 간사도 하고 운영위 간사도 하고 기재위원장도 다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도 많이 하고 뭣도 많이 하는데 제가 받은 솔직한 소회가 이거예요. ‘그려, 너 떠들어라. 난 모르겠다. 니가 국토위에 얼마나 있겠느냐?’ 그래서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이렇게 안하무인인 국가기관도 있구나. 제가 이제까지 만난 어느 기관도 국토교통부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정감사 때 제가 많은 지적을 했고 ‘시정사항을 마련해서 대책을 마련해라. 가셔서

보고해 달라'라고 했던 게 국토부를 포함해서 여기 모든 산하기관이 '알겠습니다' 하는데 지금까지 단 하나의 기관도 그 대책을 마련해서 가져온 기관이 없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13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기관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좀 갖다 달라고 하면 그냥 형식적으로 '다음에 보고하겠습니다. 추후에 보고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두 번째, 제가 여기서 유일하게 하나 한 행위가 국가의 균형발전을 맞춰 달라고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광법 개정에 대해 일관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예.

○이춘석 위원 대광법은 출발부터 문제가 있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광역단체 열일곱 곳 중에서 광역교통망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은 전라북도와 제주도밖에 없기 때문에, 제주도는 섬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이 필요 없다 하더라도 전라북도는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하니까 장관님께서는 제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거기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누누이 하시지만 국토부차관은 나와서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대안을. 그래서 지금 몇 번 연기됐습니다. 지금 해가 바뀝니다. 국토부가 어느 대안도 안 가지고 왔습니다. 가져왔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힘센 기관이라고 생각하는, 국토교통부보다 훨씬 힘센 기관이라고 하는 기재부는 직접 찾아와서 보고도 했고 전화도 몇 번 하면서 나름대로의 구상과 이런 것들을 몇 번을 했습니다.

자,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국토위원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십니다.

○이춘석 위원 그런데 제가 국토위원이라고 생각하시는게 국토위원이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면 적어도 소속기관이나 국토부가 보고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대책을 갖다가. 그냥 너 떠들어라, 니가 언제까지 여기 있겠냐. 저도 이런 얘기 계속해서 반복하기 싫습니다. 하지만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겁니다, 이것은 진짜. 계속 이렇게 합시다, 내년에도.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답변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우선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다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뿐만 아니고 다른 상임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스크린을 해서 어렵게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한 이행이라든지 수용 여부 등을 다시 한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광법 개정 문제 관련해서는 제 생각은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재정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저희만의 답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고, 이 논의를 위해서 저희 담당 차관이나, 차관이라 함은 대광위 상임위원을 이야기합니다. 담당 차관이나 담당 실·국에서 의원님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를 받았고 그렇게 됐는데 위원님께서 방금같이 제대로 된 국토부의 피드백을 못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굉장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대광위 관련 규정은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국토부도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의견 표명을 한 게 있습니다. 입장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기 위원** 더불어민주당 화성정 전용기입니다.

장관님, 저도 비슷한 맥락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정치적인 정파적인 내용을 빼고 내란과 관련된 이 탄핵 정국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건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으로서 해야 될 소신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특검과 관련돼서 야당은 왜 재고를 안 하느냐, 내부적으로 검사 추천권과 관련돼서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사례도 검사를 오히려 야당이 추천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BBK 특검도 그랬고, 드루킹 특검 때도 민주당은 빠진 채 드루킹 검사를 추천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은 어떤 부분에서 검사 추천권이 야당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신 겁니까, 국무위원들께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국무회의 석상에서 법무부장관이 재의, 담당 장관이 재의 요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국무위원들이 토론을 하거나 또는 토론이 없으면,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되는데.

제가 그때 법무부장관이 재의 요구한 내용을 아주 주의 깊게 들었더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의 의견이 제가 그때 느낄 때는 타당한 지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춘석 위원님이나 전용기 위원님께서 오늘 새로운 사실을 저한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스터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기 위원** 과거 사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기 위원** 기본적으로 검사 추천권이 위헌적이다라고 하는 법무부장관의 지적은 절대 동의할 수가 없었는데 뺀뺀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퇴를 하셨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후에 입장을 국무회의가 열린 이후에라도 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내 주셔야 됩니다. 의견이 없다고 법무부장관의 이야기를 다 들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봐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엄 당시 상황을 잠시만 보면요, 비행기 다 취소됐었지요? 출입국, 비행기가 다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전용기 위원** 계엄 당시에는 없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전용기 위원** 저희가 제보를 받은 거에 의하면 일단 계엄 때는 비행기가 취소가 됐었고 그다음에 계엄 해제가 난 뒤에 다시 비행 스케줄이 그대로 진행이 돼서 기본적으로 몇 시간씩 연착이 된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시간대에도 저희가 항공기 운항 상황을 파악했었는데 운항에 문제 없이 원래 스케줄대로 다 운항을 했습니다.

○**전용기 위원** 만약에 계엄이 해제가 되지 않았더라면 스케줄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주종완** 계엄과 상관없이 운항 스케줄대로 운항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 날 다음 날도 똑같은 운항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전용기 위원** 그러면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가 되지 않았더라도 항공 스케줄상은 문제가 없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주종완**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전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주종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대는 심야 시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항들이 커few(curfew), 그러니까 운항제한시간이 원래 걸려 있던 시간입니다.

○**전용기 위원** 그렇지요. 심야 시간에 당연히 제한 시간에 걸리지요. 그런데 계엄 상황이 터지고 나서 항공 스케줄이 조정되었고 이후에 계엄이 해제돼서 그 스케줄도 움직이는데 이 조정하는 과정 중에 연착되는 경우가 있었고 실제로 인천공항에서는 그때 1시간 씩 연착되는 항공기가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계엄 상황이 열리더라도 항공 스케줄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는 거지요?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주종완** 그렇습니다.

○**전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장관님,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무회의를 결국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그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왜냐하면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 소집을 누가 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용산의 대통령 부속실 행정관이라고……

○**전용기 위원** 보통 국무회의 소집을 누가 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국무회의는 따로 소집하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연락이 오지요.

○**전용기 위원** 그런데 급하게 연락을 받으신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국무회의라고 들어오라고 연락, 국무회의의 ‘국’ 자도 없었고요.

○**전용기 위원** 그러면 그냥 들어오라고 연락을 받으신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통령실로 빨리 들어오셔야 되겠습니다라는 연락만 받았습니다.

○**전용기 위원** 총리께서 부르신 적은 없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언제요?

○**전용기 위원** 계엄 당일 날 국무회의 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아니요, 없었습니다. 그거는 해제할 때, 해제할 때는 총리실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용기 위원** 해제할 때는 총리실로 받았고 그다음에 계엄을 할 때는 대통령실로 받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통령실로부터 받았는데 국무회의를 한다고 부른 게 아니었고요.

○**전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통령실 빨리 들어오시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고 그러면 다들, 이 중에 공직 해 보신 분도 계시지만 대통령실에서 빨리 들어오라고 그러면 무조건 빨리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이유를 따져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요.

대도시광역교통위원장님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출퇴근하는 광역교통망이 지속적으로 감차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화성시에서도 올라오는 M버스가 많이 감차되고 있는데 그 증감 차가 결국에는 예산 문제 때문이라고 보는데 왜 이렇게 유동성이 심한가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강희업** 아무래도 M버스 같은 경우는 준공영제가 아니고 민영 형식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재정 적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민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거는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전용기 위원** 그게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질문을 드린 건데.

올해 증감 차 내역을 일단 정리해서 저희 방으로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것의 사유에 대해서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남부권이나 북부권에서 출퇴근을 하는 분들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감차 문제 때문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 내용을 일단 먼저 파악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강희업** 예.

○**전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호 위원** 12·3 비상계엄 이후에 저희가 사실 수방사 지하벙커에서 새해를 맞을 뻔 했습니다.

요즘 나오는 기사들 보면 허탈하고 굉장히 놀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한준호 위원** 관련해서 우선 장관께서 언론에 밝히신 내용들 하나하나 체크를 먼저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실 부속실 행정실 행정관이 연락을 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한준호 위원** 그리고 국무회의라는 말은 없었고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한준호 위원** 통상적으로는 국무회의가 잡히면 그냥 내부적으로 이날 국무회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가시는 건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제가 장관 1년을 했는데요 그렇게 임시 국무회의가 갑자기

열리거나 한 경험은 없습니다. 매주 화요일 날……

○**한준호 위원**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연락을 받았을 때 대략적인 어떤 느낌이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국무회의라고……

○**한준호 위원** 이게 무슨 큰일이 났구나 이렇게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아니요. ‘무슨 이 시간까지 일을 하시나’, 장관 몇 명이 앉아서 이야기하다가……

○**한준호 위원** 대개 행안부장관에게 연락을 받았다는 분도 계신데 행정관에게 연락을 받으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저는 행정관에게 받았습니다.

○**한준호 위원** 장관님께 직접 연락이 갔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업무폰으로 연락이 와서 제가 그 번호로 전화를 했지요.

○**한준호 위원** 그 번호로 전화를 하셨다. 비화폰을 쓰거나 그러지는 않으셨고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저는 비화폰이 없습니다.

○**한준호 위원** 연락을 받은 게 9시 18분, 택시로 이동을 하셨네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택시.

○**한준호 위원** 1시간 걸렸는데 택시가 잘 안 잡혔나 보네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택시 타는 데까지, 산본역에 그 시간에 택시가 줄 서 있거든요. 거기까지 한 5분 10분 정도 걸어가야 됩니다.

○**한준호 위원** 보통 카카오 콜이나 이런 걸 부르는데 직접 가서 타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제가 산본 중심상가 부근에 있었기 때문에 카카오 콜 부르는 것보다……

○**한준호 위원** 그게 더 빨랐다라고 판단하셨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줄 서 있는 택시 타는 것이 훨씬 빠르다고 판단한 겁니다.

○**한준호 위원** 그러면 저녁 중간에 가신 거네요.

총리는 국무회의 소집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가 보니까 국무회의는 아니었고 그리고 그 회의 자체가 끝나 있었던 거네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통령님이 발표를 하고 계셨으니까요.

○**한준호 위원** 그러면 23분 이후에 가신 거네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거의 동시에 제가 앉자마자 발표……

○**한준호 위원** 그때 가 보니까 다른 국무위원들 상황이 어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다른 국무위원님들이나 용산의 보좌진들께서 다수 계셨고요.

○**한준호 위원** 어수선했습니까 아니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어수선한 상태로 그렇게 계셨습니다.

○**한준호 위원** 끝나고 나서는 어디로 이동을 하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끝나고 나서는 정동에 저희 서울 사무실이 있습니다.

○**한준호 위원** 정동으로 이동을 하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한준호 위원** 그때는 뭘 이용하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때는 관용차를 탔습니다.

○**한준호 위원** 그때는 대통령실로 관용차가 왔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제가 산본에서 용산까지 택시 타고 가면서 관용차를……

○**한준호 위원** 관용차가 와서 정동으로 이동을 하셨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용산 부근에 대기를 시켜 달라고 저희 비서실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관용차가 오게 됐습니다.

○**한준호 위원** 그러면 총리의 이야기처럼 총리가 소집을 한 것도 아니고, 사실 국무회의라는 건 총리가 소집할 수도 없는 건데 그리고 국무회의도 아니었던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행안부장관이나 이렇게 직접 연락을 받은 게 아니라 대통령실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 이것까지는 맞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저는 대통령실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준호 위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하나 놓쳐지고 있는 것 같아서.

혹시 계엄법 읽어 보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옛날에 법대 다닐 때 읽어 봤습니다.

○**한준호 위원** 아니, 이번 상황 발생하고 나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번 상황에서는 안 읽어 봤습니다.

○**한준호 위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7조 8조에 담겨 있습니다.

계엄법상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선포지역의 모든 행정사무, 사법사무는 계엄사령부가 관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한준호 위원** 장관님까지도 역할을 할 수가 없게끔 계엄사령부가, 아까 항공실장님 말씀하셨는데 이 상황이 되면요 공항도 마찬가지 계엄사령부가 관장을 하는 겁니다. 일상적으로 비행기가 운항이 안 돼요.

그런데 11시 50분 긴급회의를 지시하셨는데 이때는 왜 갑자기 긴급회의를 지시하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계엄이라는 엄청나게 큰일이 생겼으니 우리 간부 공무원들……

○**한준호 위원** 어떻게 해야 될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간부 공무원들에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상황을 잘 모니터링하고……

○**한준호 위원** 그 정도 됐으면 계엄법을 한번 누군가는 읽어 봐야 됐을 텐데 이건 차관님들께서 읽어 보셨나요?

계엄 포고령이 내려지면 계엄 포고령은 받으셨을 테고 계엄법 상황에서 행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확인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계엄 포고령이라는 걸 따로 전달받은 바 없습니다.

○**한준호 위원** 포고령은 23분에 내려간 걸로 공포됐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언론에서……

○**한준호 위원** 포고령은 11시 23분에 공포가 됐어요. 이거는 뉴스 틀고 있으면 다 아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러니까 언론에서 봤지요. 우리한테……

○**한준호 위원** 그러니까 포고령은 다 보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한준호 위원** 그러면 계엄이 진행되면 전국 비상계엄 상황인데 행정부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건 확인 안 해 보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한준호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긴급회의에서 지시한 내용을 한 줄로 요약을 해 놨는데 국민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 철도 항공 교통 건설현장 정상가동 지시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요. 일단 우리 공무원들에게 정위치해라.

○**한준호 위원** 정위치해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정위치하고 경거망동.....

○**한준호 위원** 언론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아니, 그거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정위치하고 경거망동하지 말고 통신망을 잘 유지하고 있어라, 무슨 연락이 갈지 모르니까.

○**한준호 위원** 그 세 가지 이외에는 지시한 게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통실장에게 내일 아침 출근길에 버스·택시가, 도로·철도는 이야기한 적이 없고요. 버스하고 택시가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도록.....

○**한준호 위원** 왜 철도는 안 챙기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철도는 공공기관에서 하니까요. 그거는 코레일에서 하니까 당연히 코레일 사장 판단하에 할 테고.

○**한준호 위원** 비상계엄 포고령 1호 6조에 보면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 세력을 제외한, 그러니까 저희 같은 국회의원들이나 반국가세력으로 판단되는 사람들을 뺀 일반 국민들의 일상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라고 되어 있고, 만일에 11시 50분 상황에 계엄이 해제될 것이나 해제될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사실 행정부의 역할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조사도 받고 하실 텐데 장관의 긴급 지시사항이 계엄령에 따른 계엄 협조 지시사항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않고, 당연히 장관으로서.....

○**한준호 위원** 해당될 수 있다고요. 장관님의 생각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러니까 행정각부의 장관으로서 제가 챙겨야 될 최소한의 의무를 챙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엄이.....

○**한준호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계엄에 협조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건데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될 거라고 보셨습니까, 그 11시 50분 상황에? 계엄이 지속될 거라고 보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 당시에는 그런 판단을 할 만한.....

○**한준호 위원** 계엄이 벌어졌다까지는 판단하신 거고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벌어졌다는 건 눈으로 보이니까 본 거고요. 그게 해제될 건지 안 될 건지 그렇게 고차원적인 사고를 그 순간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다

마찬가지였겠지만.

○**한준호 위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계엄이 지속된다라고 본다면 본인은 어떻게 할 생각이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그게 11시, 그러니까 한시간 남짓에 내가 계엄 되면 뭘 하냐, 사표를 쓰냐 그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상황이 어떻게 가는지 텔레비전을 열심히 보고 있었고 그리고 비상 간부회의 소집해서 직원들한테 정위치하고……

○**한준호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앞으로 이 관련된 국조나 특검이 진행될 텐데 여기에는 적극 협조하실 생각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당연히 적극 협조할 겁니다.

○**한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진 위원님.

○**권영진 위원** 박상우 장관님 이하 국토부 공무원들 또 우리 산하기관들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은 사실 비상시국입니다. 장관님을 비롯해서 비상시국에 맞는 자세로, 비상한 각오로 그렇게 국정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야 위원님들 질문을 보면서 아직도 이 비상 시국에 대한 우리 인식이 조금은 허술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저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소식을 대구에서 들었습니다. 대구에서 듣고 KTX가 끊어져서 차를 구해서 급히 올라오고 있는 중에 복기왕 위원님께서 또 저한테 전화하시고 해서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비상계엄은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달려왔습니다마는 제가 죽전휴게소 오니까 방망이를 땅땅땅 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국회가 그래도 빨 빠르게 대응해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렇게 헌법적인 국회의 권한을 가지고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킨 건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고 수고하신 의원님들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마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언하게 된 그때까지의 답답했던 심정은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비상계엄이라는 그런 수단을 통해서 해결하기보다는 국민과 야당을 더 인내하면서 설득하고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다만 과연 비상계엄의 과정에서 어떤 위법한 것이 있었는지 어떤 위헌이 있었는지 그것이 내란죄에 해당되는지는 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자칫 여론을 앞세워서 대통령의 방어권을 무력화시키거나 이렇게 해서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과정에서 우리가 가짜뉴스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민들을 더 불안하게 하고 혼란시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제가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 날 운영위원회에서 민주당 위원님께서 아까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관저의 그 건물 똑같은 건물을 놓고 저게 호화 스크린골프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여했던 경호처 차장은 그것이 창고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민주당 위원님께서 또다시 무속 관련된 시설이 있다라고 제보를 빌려서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그 제보가, 지금 김어준 씨의 개인 유튜브에 보니까 얼마 전에 이삿짐을 실은 트럭이 들어갔는데 그날 굿을 했고 거기에 굿하는 짐들이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마치 제보라는 이름으로 또 우리 상임위에서 이렇게 얘기된 것이 아니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위원장님, 저 관저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한번 가서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맹성규 좋습니다.

○권영진 위원 저 시설에 무속이 있는지 또 스크린골프장이 있는지 그게 명백하게 밝혀지고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준호 위원 지금 다 치웠겠지.

○권영진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내란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 저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찬성하고 좀 후회했어요. 왜 후회했나 하면 사실은 저는 당초에 3개 정도 의혹으로 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의혹이 15개로 늘어났습니다. 그 법대로 가면 정말 여당 의원들까지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한준호 위원 2개로 줄였습니다. 2개로 줄였어요.

○권영진 위원 한준호 위원님, 제가 말씀할 때 끼어들지 마세요.

○한준호 위원 아니, 사실 여부가 달라서. 2개로 줄였습니다.

○권영진 위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란 특검법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당초에 민주당의 원안은 제삼자 특검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 민주당이 그래도 여야 합의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내란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도 공히 지금 제삼자 특검도 아니고 민주당 1명,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 1명씩 추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걸 그냥 여당은 반대하게 만들고 그리고 거부권 행사를 또 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 조금은 더 우리 여야가 같이 할 수 있는 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거에 드루킹 특검법이나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특검법은 물론 여당은, 대통령이 소속된 당은 추천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특검이라는 것은 검찰을 못 믿기 때문에 특별한 특검을 통해서 공정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하는 게 중요하고 여야가 할 수 있는 법안들을 우리가 같이 고민하는 노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동시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비상계엄 그리고 국회 탄핵소추안이 결의된 이후에 여야가 굉장히 좀 신경질적으로 날카로워져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상임위를 하면서 솔직히 많이 걱정됐습니다. 우리 상임위도 또 파행되지 않을까. 그러나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서로가 격조를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우리 상임위만큼은 같이 한번 상의하고 협의하고 가능하면 합의하는 그런 전통을 이어 갔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어려운 상황에서 인내하면서 함께해 주신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 또 국민의힘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운영해 주신 맹성규 위원장님께도 감사말씀드리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문진석 위원님.

○문진석 위원 존경하는 권영진 간사님 말씀에 제가 토를 다는 건 아닌데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12·3 내란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면 ‘이건 수사해 봐야 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증거들이 전 세계 TV로 생중계된 게 12·3 계엄 내란 사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국민의힘이 국민들한테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사과하고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하면 전혀 국론 분열이라는 게 있을 수 없을 텐데 지금 최근의 상황을 한번 좀 보십시오. 태극기부대들이 광화문 집회에 모여서 ‘탄핵 반대’ 이런 걸 외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국론이 분열이 되고 나라가 더 혼란스러워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아직도 내란이 끝나지 않았구나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하루빨리 정리되기 위해서는 사과할 사람 사과하고 수사받을 사람 빨리빨리 수사받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헌법을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본인이 또 법조인 출신이고 공정과 상식을 관철시키겠다 이런 모토로 대통령이 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지금 헌법재판소의 송달도 받지 않고 조사받으라고 해도 조사도 안 받고 이러면서 무슨 대통령 자격이 있는 겁니까? 물론 직무정지됐지만 그래도 한때 국가 지도자였다고 한다면 법을 지켜야지요, 헌법을 지켜야 되고.

그러면서 또 우리 국민의힘……

○서범수 위원 잘 나가다가 간사들이 왜 그러세요, 또. 간사들이 지금 불을 질려요, 또.

○문진석 위원 아니, 나라를 위한다면, 정말 빨리 나라의 혼란을 수습하려고 한다면 사과할 사람 사과하고 수사받을 사람 빨리빨리 수사받아서 이 사태를 빨리 종결짓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여튼 뭐 토를 달려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저도 정말 나라가 걱정돼서 한 말씀 드린 거고요.

우리 국토교통위원회가 2024년 용산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라든가 또 어린이공원 조성 예산을 전용해서 집들이 잔치를 한 것 여러 가지 이런 오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전세사기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물론 정부 여당의 전향적 자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쿠팡 노동자들의 노동 개선, 쿠팡 CLS 노동자들이 그동안 파로사들이 빈발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됐지만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집요한 문제 제기와 우리 국토교통부의 전향적인 자세 그리고 쿠팡도 당연히 전향적인 자세를 통해서 우리 국토부의 의지와 쿠팡의 전향적인 자세가 합쳐지면서 그나마 연말에 우리 쿠팡 노동자들한테 노동조건이 좀 개선된 이런 제도를 개선할 수 있어서 무엇보다 그런 것들이 성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킨 전세사기 특별법이 실제로 현장에서 잘 작동되고 있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몇 가지 우려사항이 있는데 제가 일일이 다 지적하고 싶지는 않지만 불법건축물 양성화 문제라든가 이게 현장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국토부라든가 LH에서 좀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준비해서 지자체에 내려보내 주면 지자체

공무원들이 이 일을 진행하는 데 훨씬 수월할 거다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외국인 피해자들 지원 대책에 대해서 1월 달부터 시행한다고 국토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좀 더 빨리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하고. 자꾸 시간이 늘어지고 하니까 외국인 피해자들도 걱정이 많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런데 조사위원회가 판정 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8월 달에 신청했는데 아직도 결론이 안 난 피해자들이 있다는 그런 민원도 제가 접수를 받았는데 실제로 논리적으로 하면, 이 규정대로 하면 75일이면 판정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 지금 8월이면 120일이나 지났는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것, 이런 것들을 좀 더 실질적으로 피해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도 치밀하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도 좀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쿠팡 관련해서는 우리 쿠팡 노동자들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숨은 돌렸는데 이게 제도적으로 관행적으로 아주 정말 단단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실태 점검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국토부가 실태 점검할 때 제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좀 더 치밀하게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국토교통부장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산하기관 단체장님들도 고생 많으셨다. 그리고 우리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께서도 고생 많으셨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마쳤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준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준호 위원** 질의보다는 제 질의의 답변 과정에서 좀 상이한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이걸 지적을 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로부터 입장을 받거나 자료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와 철도는 지시한 적이 없다. 철도는 공공기관이 하니까’라고 장관께서 구두로 답변하셨지요? 그리고 경거망동하지 말라, 통신망 유지해라 정도로 지시를 했다고 주장은 하셨는데 저희 의원실로 서면으로 제출된 자료에 보면 정확하게 국민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 철도 항공 교통 건설현장 정상가동에 노력할 것이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차관, 대광위 위원장, 본부 실국장 전원이 참석했다,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았다 이렇게 왔는데 이게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았는데 사무관이 이거를 어떻게 추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저희 의원실에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에 장관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지금 저희 의원실에 허위로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한 거예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은 것에 장관의 말씀과 지금 사무관이 보내온 자료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지시, 즉 이것에 써 있는 것이 그대로라고 한다면 이거는 계엄 포고령 1호 6조에 해당되는 것을 이행하기 위한 지시였다고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관을 위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명확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제 기억은 버스하고 택시, 내일 아침에 버스하고 택시.....

○**한준호 위원** 그러면 이거를 사무관이 어떻게 추정해서 이렇게 저희한테 보고를 했을까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볼 텐데.....

○**한준호 위원** 경위를 파악해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제가 다른 분한테 총괄적으로 지시한 것이 아니고.....

○**한준호 위원** 두 가지예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교통실장을 따로 호명을 해서.....

○**한준호 위원** 그거를 같이 서면에 담아 주시고.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교통실장에게, 버스하고 택시를 담당하는 실장입니다.

○**한준호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위원장 맹성규** 한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한준호 위원님이 답변받은 내용하고 장관님이 지금 상임위에서 답변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거니까 명확하게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호 위원** 이거는 장관께서 목소리를 높일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장관 나중에 조사받고 하실 때 이게 전부 다 제가 오늘 기록을 위해서, 영상으로 남겨놓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허위로 보고하신 거예요.

○**위원장 맹성규** 명확하게 다시 제출하세요.

○**한준호 위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위원장 맹성규** 명확하게 다시 제출하십시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간략히 지금.....

○**복기왕 위원** 우선 장관님께서 이소영 위원의 특검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일종의 커밍아웃을 한 것처럼 저는 들렸는데 윤석열 탄핵 이후와 지금은 다르다, 계엄 이전과 지금은 다르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다른 특검법 현재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부분이 국무회의에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고, 과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토교통 분야의 부하였다면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국무위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우리가 동대구역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고받았는데 여전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말 이외에 없어요. 6월 달부터 업무보고 받아 가면서도 사실상 박정희 동상과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러한 형식적 조치만 취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대구 지역의 국토교통부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신공항 관련해서 667억,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 관련해서 2009억, 도시철도 4호선 건설 관련해서 139억. 국토부에서

박정희 동상을 반드시 막겠다는 의지가 있었으면 이러한 일들과 연결 지어서 충분히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게으르게 한 것 아닌가 혹은 어떤 대책도 세우지 않았던 것 아닌가, 피하려고만 했던 것 아닌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위원장님께서 동대구역의 박정희 동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행정대집행을 하고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를 한다든지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듣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추가적으로 또 질의하실 분?

이연희 위원님.

○**이연희 위원** LH 사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저번에 국정감사 할 때 공공주택 물량에 대해서 5만 호 올해 안에 다 착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물량은 대충 맞추신 것 같은데 그것도 집중적으로 20일부터 밀어내기를 했던데, 착공이라 함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일단 현장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걸 의미합니다.

○**이연희 위원** 공사라 함은 삽 하나 뜨면 공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일상적으로……

○**이연희 위원** 제출된 계획서를 보면 상당수 물량이 12월 30일 날 착공하겠다는 계획들이 다수 쭉 되어 있던데 삽 하나 뜨면 올해 착공 들어가는 거예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그건 일률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삽을 뜯다는 얘기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사를 재개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사장님도 말씀하시고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공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주택시장 안정에 매우 중요하잖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예,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리고 특히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는데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5만 호를 한 달 사이에, 그것도 일주일 사이에 막 밀어내기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무슨 행정입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그런 부분이 매년 관행적으로 되어 왔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내년도 계획을 세우면서는 그것을 지양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연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주일 사이에 그렇게 막 4만 1000호 물량을 착공할 그런 역량이 있으면 그것을 한 달에 5만 호씩 해 보세요. 지금 내년도 상반기에 경기가 제일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데 내년 1월에도 그렇게 해 보세요. 한 달에 5만 호씩 일주일에 5만 호씩 이렇게 밀어내기 하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위원님, 그게 서로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저희가 조달청으로 업체 선정 권한을 위임했지 않습니까? 조달청으로 업체 선정 권한을 위임하기 이전에 착공을 위해서는 거의 한 1년 정도……

○**이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변명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당부드리는 것도 내년도에 건설 경기를 부양시키는 게 국토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그러면 이전에 해 왔던 관행대로 12월 달에 몰아서 밀어내기 하지 마시고 상반기에 그것도 좀 계획을 가지고, 조달계획도 미리미리 짜서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물

량 공급을 하는 그 준비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예, 내년에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장관님 그런 부분을 잘 좀 관리 감독을 하셔서, 올해 예산 중에서도 저번에 상임위에서 증액한 1조 3000억인가요 이 부분도 지금 반영이 안 돼 있고 국토부 예산 자체도 지금 SOC 예산이 1조 이상 깎인 상태에서 제출이 됐는데 내년도 경제 살리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려면 결국 건설 경기가 많이 부양이 되어야 되는데 상반기에 그런 SOC나 주택공급 물량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맹성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상임위를 진행했습니다. 국토부와 산하기관에서는 국민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다시금 생각하고 자세를 다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쿠팡 CLS 근로자가 더 이상 과로사로 죽어 가는 상황은 끝내야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지고 또 다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비상계엄으로 인한 경제 위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비상계엄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법정 관리권이 없는 대구시가 누구를 위해 박정희 동상을 설치해야 하는지, 과연 박정희 대통령의 명예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왜 지금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지 강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토부와 공단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이라는 생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상의 평온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국토부는 민생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해야 하고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역사 앞에 책임을 지는 자세를 지고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각 기관장은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일주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장관을 비롯한 기관장 및 정부관계자 여러분, 국회 직원과 의원실 보좌직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2분 산회)

○출석 위원(30인)

권영세 권영진 김기표 김도읍 김은혜 김정재 김희정 맹성규 문진석 민홍철
박용갑 복기왕 서범수 손명수 송기현 안태준 엄태영 염태영 윤영석 윤재옥
윤종군 윤종오 이소영 이연희 이춘석 전용기 정점식 정준호 한준호 황운하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이성권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전문위원 곽현준

입법심의관 문성환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제1차관 진현환

제2차관 백원국

기획조정실장 문성요

국토도시실장 이상주

주택토지실장 김규철

교통물류실장 엄정희

항공정책실장 주종완

모빌리티자동차국장 전형필

도로국장 이우제

철도국장 윤진환

비상안전기획관 이경진

기술안전정책관 김태병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 안석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강희업

상임위원 김수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 김형렬

차장 강주엽

새만금개발청

청장 김경안

차장 조홍남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한국도로공사
사장 함진규
한국철도공사
사장 한문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이학재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 이정기
한국부동산원
원장 손태락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유병태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정용식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이성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양영철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어명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김일환
주식회사에스알
대표이사 이종국

【보고사항】

○의안 회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7.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7.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7.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7. 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1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7.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7. 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7. 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46)

이상 7건 11월 28일 회부됨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024. 11. 28. 위성곤 의원·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8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8.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9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8. 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0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8.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11)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8. 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15)

이상 5건 11월 29일 회부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9. 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9.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83)

이상 2건 12월 2일 회부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7)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 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0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 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03)

이상 3건 12월 3일 회부됨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9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90)

이상 4건 12월 4일 회부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5.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64)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5.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6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5.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67)

이상 3건 12월 6일 회부됨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2. 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36)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2. 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3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2. 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42)

이상 3건 12월 13일 회부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3. 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0)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6.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9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6.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9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6.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98)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6.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0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6.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05)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6.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09)

이상 7건 12월 17일 회부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7.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5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7.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6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7.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80)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7. 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07)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7.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19)

이상 5건 12월 18일 회부됨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8.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6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8.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87)

이상 2건 12월 19일 회부됨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9. 문진석 의원·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9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9. 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99)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9. 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07)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9. 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3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9. 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3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9. 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4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9. 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4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9. 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4)

이상 8건 12월 20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지방세특례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7.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9)

11월 2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9.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6)

알오토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4. 11. 29.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0)

이상 2건 12월 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

(2024. 12. 3.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3)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2024. 12. 3. 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70)

이상 2건 12월 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6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2024. 12. 13. 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78)

이상 2건 12월 1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2024. 12. 19.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34)

12월 2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행정입법명	공포번호	공포일	비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4961호	2024. 10. 25.	대통령령
도로법 시행령	제34962호	2024. 10. 25.	대통령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973호	2024. 10. 29.	대통령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4974호	2024. 10. 29.	대통령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4984호	2024. 11. 5.	대통령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34985호	2024. 11. 5.	대통령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987호	2024. 11. 8.	대통령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002호	2024. 11. 12.	대통령령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015호	2024. 11. 26.	대통령령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제1394호	2024. 10. 10.	부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95호	2024. 10. 16.	부령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96호	2024. 10. 17.	부령
도로법 시행규칙	제1397호	2024. 10. 25.	부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98호	2024. 10. 29.	부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399호	2024. 11. 5.	부령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401호	2024. 11. 12.	부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02호	2024. 11. 11.	부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03호	2024. 11. 13.	부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04호	2024. 11. 15.	부령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405호	2024. 11. 13.	부령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07호	2024. 11. 22.	부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06호	2024. 11. 25.	부령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08호	2024. 11. 26.	부령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제1409호	2024. 11. 26.	부령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411호	2024. 11. 29.	부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13호	2024. 11. 29.	부령

행정입법명	공포번호	공포일	비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401호	2024. 10. 23.	입법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423호	2024. 10. 30.	입법예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433호	2024. 10. 30.	입법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448호	2024. 10. 31.	입법예고
도시개발법 시행령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444호	2024. 10. 31.	입법예고
주택법 시행령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460호	2024. 11. 1.	입법예고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469호	2024. 11. 4.	입법예고
도시철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472호	2024. 11. 6.	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474호	2024. 11. 6.	입법예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491호	2024. 11. 7.	입법예고
유료도로법 시행령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514호	2024. 11. 12.	입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522호	2024. 11. 13.	입법예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525호	2024. 11. 13.	입법예고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528호	2024. 11. 18.	입법예고
법인 등기제도 개편에 따른 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 제2024-209호	2024. 11. 26.	입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586호	2024. 11. 27.	입법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607호	2024. 11. 29.	입법예고